

최종보고

# 미래지향 디자인 산업 법령 체계 개편 연구

2024. 12.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연구책임자: 신용우 변호사

(Tel: 02-6200-1974, 010-8181-7141, E-mail: ywshin@jipyong.com)

## < 목 차 >

I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II . 현행법 주요 내용 검토 .....	4
III .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 방안 검토 .....	33
IV .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 .....	77
V . 디자인기본법 제정 방안 .....	151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연구의 목적

### 가. 개요

- 미래지향적 디자인 산업진흥 정책기반 구축과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산업디자인진흥법”)을 포함한 디자인 주요 법제 체계 개편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나. 미래지향적 디자인 산업진흥 정책기반 구축

- 디자인의 활용범위가 제품의 외관을 꾸미는 단순 기능에서, 소비자 매력도를 높이는 기능성과 심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창조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음
  - 외적인 스타일링에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 혁신을 견인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로 확장하고 있으며, 기술과 디자인의 결합, 비즈니스와 디자인의 결합 등 산업 융합의 중심에 있음
- 신산업이 등장하고 제품과 서비스가 다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디자인 유형이 등장하는 등 디자인 외연이 확대되고 있음
  - 과거 포장디자인이 최근에는 시각·제품·UX·서비스 산업 디자인으로 확대되고 있음
  -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제품·포장·환경·시각·서비스디자인의 5개를 예시하고 있는 있는데 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2024년 발간한 디자인산업통계 보고서는 산업디자인의 종류를 제품, 시각, 디지털/멀티미디어, 공간, 서비스·경험, 패션·텍스타일, 산업공예, 디자인인프라 총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 디자인 산업의 구조가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진흥법제로서 개정의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창의적 인적자본 축적, 디자인 기업 금융 지원 등을 통한 디자인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유도해야 함
  - 새로운 해외 시장 진입, 디지털기술역량 강화, ESG 디자인 선도 등 새로운 미래 성장을 위한 도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및 생성형 AI의 등장, 지속가능 디자인의 중요성 부상, 소비자 경험(UX) 확산 등 디자인 산업 환경이 변화함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특히 생성형 AI의 활용으로 디자인 창작·개선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7.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①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 ② 핵심 경쟁력 확보, ③ 신시장 창출, ④ AI 디자인 제도·규범 설계 등을 담고 있음
  - EU 의회 및 이사회는 2024. 4.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을 승인하여 최종 확정 되었음

#### **다. 거버넌스 정립**

- 디자인산업 진흥에 관한 소관 법률이 개별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움
  - 디자인산업 진흥에 관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부 소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체부 소관), 건축기본법(국토부 소관)으로 산재해 있음
  - 더욱이 공공디자인을 담당하는 문체부와 산업디자인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분절되어 있어 예산과 정책이 집중되지 못함

#### **< 부처별 디자인 소관법 및 정책 영역 >**

① 산업부	· 산업디자인 :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② 문체부	· 문화산업 : 만화·캐릭터·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과 관련된 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 바목)
	· 공공디자인 :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성·심미성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결과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③ 국토부	· 건축디자인 : 품격·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개선하는 행위 (건축기본법 제3조)

## **2. 연구의 필요성**

- 디자인 산업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디자인진흥법을 포함한 법제 개선이 필요함
  - 최근 디자인 산업은 기술 혁신과 산업 융합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제품 디자인의 단순한 외형에서 벗어나 기능성과 심미성을 결합하

여 혁신적인 제품을 창조하고, UX · 디지털 · 서비스 디자인 등 새로운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지속가능성 요구 등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함에 따라, 현행 디자인 관련 법제와 정책이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함. 이에 따라 산업디자인진흥법을 포함한 법제 체계 개편이 시급함

- 디자인 산업의 세분화 및 전문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와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디자인 산업의 세분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산업디자인 법주를 넘어서 다양한 디자인 유형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디자인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지원이 필요함
  - 디자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해외 시장 진입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장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창의적 인재 양성, 금융 지원 등 디자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현재 디자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책의 집중화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와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본 용역의 연구가 필요함

## II. 현행법 주요 내용 검토

### 1. 산업디자인진흥법

#### 가. 관련 연구 및 최근 개정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발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2020년 수행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체계 개선 및 개정을 위한 법제연구”는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음
  - 규율대상·목표 등에 있어서의 불명확성
  - 디자인 진흥을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위상 미비
  - 디자인 진흥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 구축 미흡
  - 진흥법으로서의 체계성 미비
  - 국가/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 배분 미흡
  - 디자인 분야 진흥정책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부족
  -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 중심의 규율 체계로 인한 적극적 동력 확보 미약
- 위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산업디자인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여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관련 신고 제도의 내용을 보완하였음
  - 2022. 11. 15. 개정으로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 2024. 2. 6.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제도의 운영

## 나. 관련 연구 및 최근 개정

-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디자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합적 거버넌스가 미비하고, 일반적 진흥 정책의 법적 근거들도 미흡함
  - 산업간 융합,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디자인의 규율 대상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 디자인 진흥정책의 행정 거버넌스가 통합되지 않아 조직·예산이 분산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관계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여 디자인 진흥정책이 지역 단위의 사업과 연계되기 어려움
  - 일반적 진흥법제로서의 진흥 정책의 법적 근거들이 미흡함

## 다. 현행법의 개별 조문별 검토

-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하위 법령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2021년 이후 개정사항을 정리하고, 추가 의견을 제시함
  - 2021년 이후 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빨간색 표시**로 제·개정의 내용 및 취지를 부기하였으며, 기존에 논의된 의견 외에 추가적인 검토의견은 **파란색 표시**를 하였음

### <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하위 법령 검토 >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검토
제1조(목적)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제2조(정의)이 법에서 “산업디자인” 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p>	<p>“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디자인 전체 영역 중 일부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낳고 있으나, 규범상 개념정의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디자인 일반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특정 산업에 국한된 디자인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p> <p>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소관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디자인 중에서 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두고 있어(제2조제1호 바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的 개념을 협소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p> <p>참고 : “문화산업” 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을 포함한다(문화산업법 제2조 제1호 바목)</p> <p>○ 의견 :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규율 대상을 산업 분야로 한정할 것인지 논의를 하기 이전에, 이미 디자인은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p>
---	---

	<p>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분야로, 산업과 비산업간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현실임[상업적 목적이 아닌 예술적, 감성적, 문화적 목적의 창작은 배제할 여지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따라서 ‘산업디자인’이라는 표현이 실무적으로 논의되는 디자인 일반을 대부분 포섭한다고 보아야 하며 타법률간의 체계상 착오의 여지가 없도록 ‘디자인’으로 표기를 변경하여 규율대상과 표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법명은 ‘디자인진흥법’ 또는 ‘디자인산업진흥법’으로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p> <p>한편,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아가 법률의 체계적합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문화산업 진흥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협의를 요할 것으로 보임</p>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24. 2. 6.>	<p>종합계획의 수립주체와 포함사항에 대한 최소한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조항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u>계획의 수립주기·절차·판</u>  <u>계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나 자료</u>  <u>요청·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부문</u>  <u>등의 의견수렴 등에 관한 기본적</u>  <u>규율 사항이 전체적으로 크게 미</u>  <u>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u> 특히 거시적인 성격의 종합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u>실행계획에 대한</u>  <u>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u> 동 조항만으로 디자인 분야의 진흥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율하</p>

<p>진흥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p> <p>2.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p> <p>3.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p> <p>4.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p> <p>5.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p> <p><b>6. 지역의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b></p> <p>7.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p> <p>[전문개정 2009. 5. 21.]</p>		<p>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임</p> <p>2024. 2. 6.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p> <p>○ 의견 : 계획의 수립주기는 2024년 개정으로 정하였으며, ① 관계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자료오청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부문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은 타 진흥법령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개정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p>
<p>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lt;개정 2013. 3. 23.&gt;</p> <p>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lt;개정 2013. 3. 23.&gt;</p> <p>1.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p> <p>2.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p> <p>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3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p> <p>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이하 “연구 및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lt;개정 1999. 4. 9.,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gt;</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각</p>	<p>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효율적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상 규율을 살펴볼 때 동 사업의 실시가 <u>동 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규율 중의 하나</u>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p> <p>하지만 <u>주로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 등의 범위와 자금 출연의 근거 등에만 치중한 규율을 두고 있는 점, 그 구체적인 규율은 대부분 행정입법에 담겨져 있다는 점, 동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과의 변별점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u> 지</p>

<p>부설연구소</p> <p>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p> <p>5. 국립·공립연구기관</p> <p>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다.&lt;개정 2013. 3. 23.&gt;</p> <p>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9. 5. 21.]</p>	<p>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을 주관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lt;개정 1999. 4. 9., 2008. 2. 29., 2013. 3. 23.&gt;</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 및 진흥사업의 과제에 관한 사항</li> <li>2.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책임자에 관한 사항</li> <li>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에 관한 사항</li> <li>4. 연구 및 진흥사업의 성과의 활용 및 활용대가에 관한 사항</li> <li>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li> </ol>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의 일부를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li> <li>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li> <li>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li> </ol>	<p>적할 수 있음.</p> <p><u>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이나 본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 단계에서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u></p> <p>○ 의견 : 제1항의 목적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면서 이에 조응하는 내용으로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p>
---	--	---

	<p>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p> <p>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p> <p>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8호에 따른 산업연구원</p> <p>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p> <p>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p> <p>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p> <p>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p> <p>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p> <p>10의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디자인센터</p> <p>11. 그 밖에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p> <p>[제목개정 2015. 6. 22.]</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5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p>	

	<p>참여하는 기관 등의 사업계획 또는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lt;개정 2008. 2. 29., 2013. 3. 23.〉</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기획·관리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lt;개정 2008. 2. 29., 2013. 3. 23.〉</p> <p>[본조신설 2001. 5. 24.]</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6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p> <p>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lt;개정 2008. 2. 29., 2013. 3. 23.〉</p> <p>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lt;개정 2008. 2. 29., 2013. 3. 23.〉</p> <p>[본조신설 2001. 5. 24.]</p>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7조(시장 및 지원계획 공고)산</p>	동 법률에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조항과

<p>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장 및 지원</li> <li>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 · 지원</li> <li>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li> </ol>	<p>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상 및 지원에 관한 매년도의 실시계획을 정하여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p>	<p>관련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는바,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각각 나누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예시하고 있는 부분이 특기할만 한 부분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lt;개정 2013. 3. 23., 2014. 12. 30. &gt;</li> <li>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li> <li>2.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li> <li>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li> <li>4.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li> <li>5.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li> <li>6.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9. 5. 21.]</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8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li> <li>② 전람회는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gt;</li>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품디자인 부문</li> <li>2. 포장디자인 부문</li> <li>3. 환경디자인 부문</li> <li>4. 시각디자인 부문</li> <li>5. 서비스디자인 부문</li> <li>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문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부문</li> </ol> <li>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람회의 개최일시 · 출품물 · 출품료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람회 개최일의 4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li> </ol> <p>[본조신설 2001. 5. 24.]</p>	<p>하지만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규율이 미비하고 <u>임의규정 형식</u>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적지 않게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사업에 불과하다는 점(영 제7조 및 제8조)이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임</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8조의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람회의 수준향상을 위하</p>	

	<p>여 제8조제2항 각호의 부문별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를 둔다.&lt;개정 2008. 2. 29., 2013. 3. 23.〉</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lt;개정 2008. 2. 29., 2013. 3. 23.〉</p> <p>[본조신설 2001. 5. 24.]</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9조(제품화에 대한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출품물의 제품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b>제5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b></p> <p>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 12. 22.]</p>		<p>산업디자인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권고적 효력에 머물고 있는 점, 디자인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법체계상의 배치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임</p> <p>○ 현행 표준계약서는 총 4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87호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음.</p>
<p><b>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b></p> <p>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을 선정하는</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10조(선정신청)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p>	<p>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과 이에 따른 시상 및 표지 등의 활용을 통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 및 방법, 시상, 지원 등 대부</p>

<p>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b>&lt;개정 2009. 5. 21., 2013. 3. 23.&gt;</b></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b>&lt;개정 2009. 5. 21., 2013. 3. 23.&gt;</b></p> <p>③ 삭제&lt;1999. 2. 5.&gt;</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그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산업디자인표지”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b>&lt;개정 2009. 5. 21., 2013. 3. 23.&gt;</b></p> <p>⑤ 삭제&lt;2014. 12. 30.&gt;</p> <p>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 및 방법, 시장, 지원과 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lt;개정 2009. 5. 21., 2014. 12. 30.&gt;</b>  [제목개정 2009. 5. 21.]</p>	<p>정에 의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b>&lt;개정 1999. 4. 9., 2008. 2. 29., 2013. 3. 23.&gt;</b></p> <p>②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b>&lt;개정 1999. 4. 9., 2001. 5. 24.,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li> <li>2.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li> <li>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li> <li>4.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상품</li> </ol>	<p>분의 사항이 행정입법으로 위임되어 있고 법률 단계에서의 규율이 미비한 점,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한 지원 사항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음</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11조(선정기준)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 및 색채등의 요소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li> <li>2.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li> </ol>	

	<p>3. 적합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p> <p>4.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13조(선정 및 시상)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lt;개정 1999. 4. 9., 2008. 2. 29., 2013. 3. 23.〉</p> <p>② 삭제&lt;1999. 4. 9.〉</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선정상품”이라 한다)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lt;개정 1999. 4. 9., 2008. 2. 29., 2013. 3. 23.〉</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14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대상품목·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선정상품에 대하여만 사용할 것</li> <li>2. 선정상품의 외관·기능 등 상태가 선정당시와 동일할 것</li> <li>3. 선정상품을 선전하면서 다</li> </ol>	

	<p>른 상품을 등록상품으로 오인하게 하지 아니할 것</p> <p>4.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것</p> <p>가. 해당 상품</p> <p>나. 해당 상품의 포장·설명서·보증서 및 선전유인물</p> <p>다.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것</p>	
제7조 삭제		
<p><b>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b>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lt;<a href="#">개정 2014. 5. 20.</a>&gt;</p> <p>②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產學協同)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lt;<a href="#">개정 2013. 3. 23., 2014. 5. 20.</a>&gt;</p> <p>[전문개정 2009. 5. 21.]</p>	<p>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가와 시·도 등의 다양한 공적 주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u>구체적인 사항이 부족한 선언적 수준의 규정</u>에 머물고 있고 국가/시·도/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u>다양한 공적주체가 단순히 열거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역할이나 기능 분배에 관한 규율이 미흡</u>하며, 특히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조사나 수급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수준의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 내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임</p>	
<p><b>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①</b>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조항은 「산업디자인진흥법」상의 대표적인 진흥정책에 관한 법적 근거로 평가할 수 있음</p> <p>다만 특정 회사에 국한된 지원사</p>

<p>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lt;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li> <li>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li> <li>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li> <li>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lt;개정 2013. 3. 23., 2022. 11. 15.〉</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신설 2022. 11. 15.〉</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lt;신설 2022. 1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경영지도 또는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li> <li>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필요한 인력개발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 개발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개발성과의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li> <li>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업무의 위탁)①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lt;개정 1999. 4. 9., 2008. 2. 29., 2013. 3. 23.〉</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탁자 및 수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lt;신설 2015. 6.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흥원</li> <li>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진흥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li> </ol>	<p>항에 머물고 있어 디자인 분야 전체에 대한 진흥을 선도하는데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 근거가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외에 시도지사에게도 위임이 되어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 단위에서의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가 미비한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음</p> <p>2022. 11. 15. 개정으로,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p>
--	--	--

<p>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lt;개정 2013. 3. 23., 2022. 11. 15. &gt; [전문개정 2009. 5. 21.]</p>	<p>[제목개정 2015. 6. 22.]</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lt;개정 2005. 12. 16., 2008. 3. 3., 2013. 3. 23., 2013. 12. 5., 2015. 7. 1., 2017. 10. 20., 2018. 10. 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회사가 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li> <li>2. 종합디자인분야 전문회사(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가 3개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일 것</li> </ol> <p>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lt;개정 1999. 4. 16., 2004. 11. 17., 2015. 7. 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li> <li>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li> <li>3. 삭제&lt;1999. 4. 16.&gt;</li> </ol> <p>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lt;개정 2012. 10. 5.&gt;</p> <p>④ 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p>
--	---

	<p>발급받은 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lt;개정 2012. 10. 5. &gt;</p> <p>⑤ 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lt;개정 2012. 10. 5. &gt;</p> <p>⑥ 삭제&lt;2015. 7. 1. &gt;</p> <p>[제목개정 2004. 11. 17.]</p>	
제9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업무의 위탁)①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lt;개정 1999. 4. 9., 2008. 2. 29., 2013. 3. 23. &gt;</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탁자 및 수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lt;신설 2015. 6. 22. &gt;</p> <p>1. 진흥원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진흥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p> <p>[제목개정 2015. 6. 22.]</p>	<p>동 조항은 국가기관등이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로써 적정한 대가의 지급을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협조 사항에 관한 규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p> <p>따라서 구체적인 대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주로 국가기관등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한 수준의 추상적인 규율에 머물고 있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을 것임.</p> <p>동 제도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서는 주로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음</p>

<p>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시설물의 제작·설치 등 산업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p> <p>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4. 12. 30.]</p>		
<p><b>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①</b></p> <p>국가 또는 시·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lt;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09. 5. 21.]</p>	<p>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산업디자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동 조항은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국가 등 공적 주체의 일반적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p> <p>하지만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산업디자인 보호 노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규율이 부족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도 이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이 미흡함. 더 나아가 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견인해 나가기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기능 분배에 관한 고려도 불충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p> <p>○ 의견 : 산업디자인진흥법상 산업디자인을 디자인 일반을 포괄한다는 의미로 ‘디자인’으로</p>	

		용어 변경을 하는 경우, 디자인 보호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상 디자인보호와의 차별점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국내외 산업디자인통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바, 일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과 결부된 조사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의 보호에 이은 가지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율의 배치가 체계적이지 못하며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규율이 법률상 미흡하고 무엇보다도 디자인 분야의 각종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디자인 데이터 정책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함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산업체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법학 또는 디자인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4(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17.]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진흥법에서 두고 있는 입법례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체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나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꼽아볼 수 있음.  이는 산업디자인이나 산업체재산권, 콘텐트 등이 지적재산권과 연관되어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을 사법적인 쟁송수단에 앞서 사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의견 :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는 산업체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조항(심판사건을 발명진흥법

<p>3. 변리사,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p> <p>4. 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③ 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④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p> <p>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p> <p>3.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p> <p>⑥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p>	<p>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p> <p>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p> <p>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p> <p>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p> <p>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p> <p><a href="#">[본조신설 2017. 1. 17.]</a></p>	<p>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내용)을 두고 있는데, 이와 비교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규율대상에 차별점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임.</p> <p>예컨대, 디자인보호법은 ‘심판장’이 ‘심판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산업디자인진흥법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쟁송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6(조정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p>
--	--	---

<p>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무국을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분쟁의 조정방법, 절차, 비용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a href="#">[본조신설 2015. 12. 22.]</a></p>	<p>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p> <p>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분야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a href="#">[본조신설 2017. 1. 17.]</a></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20조의7(조정의 절차)①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④ 피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a href="#">[본조신설 2017. 1. 17.]</a></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20조의8(조정서의 작성)조정위원회는 법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20조의9(조정비용)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등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20조의10(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p> <p>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 개발 지원사업</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24조(진흥원의 사업)법 제11조 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디자인에 관한 조사·연구사업</li> <li>2.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술·기능의 보급</li> <li>3. 산업디자인이 적용된 생활용품 등의 제작·유통 활성화, 창업·경영지원, 마케팅·해외진출 지원 등 생활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li> <li>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li> </ol>	<p>한국디자인진흥원 관련 규율(제11조·제12조부터 제16조·제19조)</p> <p>진흥원은 동 법률상의 각종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그 명칭이나 주요 사업 등에 있어서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적시되지 않아 디자인 분야 전반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p> <p>진흥원이 동 법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무상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진흥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p>

<p>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 · 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 · 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업을 할 수 있다.</p> <p>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⑦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lt;신설 2024. 2. 6.&gt;</p> <p>[전문개정 2009. 5. 21.]</p>	<p>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 [제목개정 2015. 6. 22.]</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25조(진흥원의 수의사업)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의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한 근거 규정이나 처벌 규정이 적지 않게 마련되어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한 부분임</p> <p><b>법률 제11조 제7항에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b></p>
<p>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① 시 · 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 · 진흥사업 · 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 · 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p> <p>제10조(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지역디자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li> <li>2. 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li> <li>3. 지역의 디자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li> <li>4.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li> <li>5. 지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li> </ol>	<p>기준에 운영 중인 3개 권역별 지역디자인센터가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미비하여 시 · 도의 현실에 맞는 산업디자인 촉진을 위한 사업의 전개가 미진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지역 단위의 조직임.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과 규율 등을 위주로 한 기존의 <u>Top-Down 방식의 거버넌스</u>에 일부 변경을 기하여, 지역에 초점을 둔 디자인 진흥정책을 전개하기 위한 목표가 반영되어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p>

<p>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 12. 22.]</p>	<p>6. 지역의 디자인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사업 7. 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 8. 지역의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사업</p> <p>[본조신설 2017. 3. 31.]</p>	<p>하지만 진흥원과의 관계 설정이나 유기적인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이 아쉬움. 무엇보다도 시·도 소속의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는 것에서 더 나아가 디자인 분야의 진흥을 지역사회·지역산업 등에 초점을 둔 Bottom-up 형태의 거버넌스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법제 개선에 대한 접근도 필요</p>
<p>제12조(진흥원의 경비 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5. 21.]</p>		
<p>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 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p>		

<p>하여야 한다.&lt;개정 2013. 3. 23.〉</p> <p>② 진홍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lt;개정 2013. 3. 23., 2014. 5. 20.〉</p> <p>[전문개정 2009. 5. 21.]</p>		
<p>제15조(보고 및 검사)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홍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홍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lt;개정 2013. 3. 23.〉</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5. 21.]</p>		
<p>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진홍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7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18조삭제</p>		
<p>제19조(별칙)제1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p>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제작·판매·판권 침해)		
<p>제21조(과태료)①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p> <p>[본조신설 2024. 2. 6.]</p>	<p>「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p> <p>제34조(과태료)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 2. 디자인 관련 다른 법률과의 비교 · 검토

### 가. 개요

- 다른 부처 소관의 디자인 관련 법률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 디자인보호법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비교함
- 디자인 산업 진흥 법제의 분산화·파편화로 인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지적함
- 산업디자인진흥법이 다른 디자인 관련 법률보다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일반법으로서 적절한지 검토함

### 나. 디자인 관련 법률과 비교

	산업디자인진흥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디자인보호법
조문	21개 조문	6장, 23개 조문	7장, 59개 조문	11장, 229개 조문

체계				
목적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규율 대상	산업디자인	공공디자인	문화산업	디자인
정의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을 포함한다.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디자인진흥 종합계획의 수립</li> <li>•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li> <li>• 산업 디자인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li> <li>•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등</li> <li>•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제작·유통에 대한 지원</li> <li>- 투자회사, 제작자, 독립제작사, 유통전문회사 등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등록제도</li> <li>• 디자인권 및 디자인권자의 보호</li> <li>• 심판절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성 · 개발사업</li> <li>• 표준 계약서의 제정 · 보급</li> <li>• 우수산업디자인 상품의 선정</li> <li>• 산업디자인전문 회사에 대한 지원</li> <li>• 회사에 대한 지원</li> <li>•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li> <li>• 산업 디자인의 보호</li> <li>•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li> <li>•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li> <li>•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li> <li>•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li> <li>-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li> <li>- 전담기관의 지정 등</li> <li>-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li> <li>-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문화상품의 지정 · 표시</li> <li>-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li> <li>• 문화산업 기반 조성</li> <li>- 전문인력 양성</li> <li>- 가치평가기관 지정</li> <li>- 기업부설 창작 연구소 등</li> <li>- 협동개발 · 연구의 촉진</li> <li>-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li> <li>- 문화산업 진흥 시설의 지정 등</li> <li>- 문화산업 단지의 조성 및 각종 부담금 면제, 인허가의제</li> <li>- 문화산업 진흥지구의 지정,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li> <li>- 문화산업 통계조사</li> <li>- 소비자보호 시책 수립</li> <li>-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li> <li>•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출원</li> </ul>
--	---	--	--	--

#### 다. 디자인 진흥을 위한 일반법으로 적절한지 검토

- 공공디자인법은 적용대상을 공공디자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산업진흥에 관한 조항이 미비하여 디자인 분야 전반의 진흥을 위한 법률로 보기 어려움
  - 공공디자인법은 그 적용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디자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디자인 분야 일반의 진흥을 위한 법률이라고 보기 어려움
  - 더욱이 공공 분야에서의 디자인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통상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에 포함되는 조항들이 미흡하여, 디자인 환경 변화 반영이 어려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디자인보다는 문화산업 전반에 초점을 두고 있는 법률이므로 디자인 분야에 대한 일반법으로 보기 어려움
  -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과 관련된 산업을 문화산업의 일종으로 포섭하고는 있지만, 디자인보다는 문화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조항을 찾아보기 어려워 디자인 분야에 대한 일반법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다양한 진흥 법제의 요소들이 규정되어 있어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 또는 디자인기본법 제정 시 참고할 수 있음
-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에 중점을 둔 법률이므로 디자인 분야에 대한 일반법으로 보기 어려움
  -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 디자인권과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법률로서 디자인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어 디자인 분야 일반의 진흥을 위한 법률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산업디자인진흥법은 디자인 분야의 진흥을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률로 평가되며, 다만 규율대상을 “산업디자인”으로 명시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의 수립, 산업디자인에 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디자인” 분야의 진흥을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률로 평가됨
  - 다만, 그 규율대상을 “산업디자인”으로 명시하고 있어 디자인 진흥을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디자인 분야 전반에 관한 진흥을 위한 일반법으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그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함

- 결국 디자인 분야의 진흥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법률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뿐임
- 비록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동 법상 해당 용어의 개념적 범위가 사실상 “디자인”의 의미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 “디자인”은 산업이라는 용어를 굳이 부가하지 않더라도 산업 분야와 필수불가결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디자인진흥법이 디자인 분야의 진흥을 위한 일반법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경우 디자인 분야 전반의 진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규정 보다는 특정 지원사업에 치중된 미시적 규율에 더 초점을 두고 있으며, 디자인 관련 진흥정책의 기본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디자인 전반을 아우르기에 미흡함
- 디자인 분야가 현대사회의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영역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산업디자인진흥법이 디자인 분야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디자인 진흥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새로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의 변경을 포함한 동 법률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

### III.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 방안 검토

#### 1. 국내 주요 진흥법제와의 비교 및 분석

##### 가. 국내 주요 진흥법제 선정

- 산업디자인법과의 비교·분석 대상으로서 국내 주요 진흥법제 선정 시 △ 산업부 및 산업디자인과의 연관성, △ 신기술·서비스 분야, △ 최근에 제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였음
  - 산업디자인은 시각적 표현물로서 미술품·콘텐츠로서의 성격이 있어 이를 소관하고 있는 문체부의 진흥 법률을 포함하였으며, 산업디자인에 ICT·데이터·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고 있어 과기부의 진흥 법률을 고려하였음
  - 이에 따라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산업디지털전환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콘텐츠산업법), 「미술진흥법」을 선정하였음
- 「산업융합 촉진법」
  - 「산업융합 촉진법」은 산업융합 촉진,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실증특례 등을 담고 있음
  - 산업부 소관 법률 중 대표적인 진흥 법률로서 산업디자인이 다른 산업과 융합이 되는 측면을 고려하였음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산업디지털전환법)
  - 산업디지털전환법은 2022. 7. 5. 시행되었으며, 산업데이터 생성 · 활용의 활성화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산업부 소관 법률 중 최근에 제정된 진흥 법률로서 산업디자인 진흥에 있어 데이터 생성 및 활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음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과기부 소관 법률로서 최근 제정되어 2024. 8. 28. 시행되었으며,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가장 최근에 제정된 신기술 기반의 진흥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음

### ○ 「콘텐츠산업 진흥법」(콘텐츠산업법)

- 콘텐츠산업법은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콘텐츠 유통 합리화, 이용자 권리 보호, 분쟁조정 등 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문체부 소관 법률 중 대표적인 진흥 법률로서 산업디자인이 콘텐츠에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음

### ○ 「미술진흥법」

- 「미술진흥법」은 문체부 소관 법률로서 최근 제정되어 2024. 7. 26. 시행되었으며, 미술 창작 · 유통 및 향유에 관한 사항,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가장 최근에 제정된 문체부 소관 진흥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음

## 나. 국내 주요 진흥법제의 체계

산업디자인법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디지털전환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법	미술진흥법
<p>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산업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연구 및 진흥 사업의 실시 등 제5조 산업디자인의 육성 · 개발사업 제5조의2 표준계약서의 제정 · 보급 제6조 우수산업디자인 상품의 선정 등 제7조 삭제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9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제9조의2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제10조 산업디자인의</p>	<p><b>제1장 총칙</b>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 우선허용 · 사후규제 원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p> <p><b>제2장 산업 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b> 제5조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제5조 연도별 실행 계획의 수립 · 시행 등 제7조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 작성 제8조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제9조 산업융합 규제</p>	<p><b>제1장 총칙</b>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p> <p><b>제2장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등</b> 제5조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산업디지털 전환위원회 제8조 전환위원회의 기능</p> <p><b>제3장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b> 제9조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활</p>	<p><b>제1장 총칙</b>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우선허용 · 사후규제 원칙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p> <p><b>제2장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b>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재원의 확보 제8조 실태조사 등</p> <p><b>제3장 콘텐츠제작의 활성화</b> 제9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1조 공공정보의 양성</p>	<p><b>제1장 총칙</b>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3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p> <p><b>제2장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b> 제5조 기본계획 제6조 시행계획 제7조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제8조 재원의 확보</p> <p><b>제3장 콘텐츠제작의 활성화</b> 제9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1조 공공정보의 양성</p>	<p><b>제1장 총칙</b>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p> <p><b>제2장 창작 · 유통 및 향유 등</b> 제5조 기본계획 제6조 시행계획 제7조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제8조 재원의 확보</p> <p><b>제3장 창작 지원</b> 제7조 창작 지원 제8조 전시 지원 제9조 창작 공간등의 확충</p>

산업디자인법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디지털전환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법	미술진흥법
<p><b>보호</b></p> <p>제10조의2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p> <p>제10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p> <p>제11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p> <p>제11조의2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p> <p>제12조 진흥원의 경비 지원</p> <p>제13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p> <p>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p> <p>제15조 보고 및 검사</p> <p>제16조 비밀업수의 의무</p> <p>제17조 별칙 적용에 서 공무원 의제</p> <p>제18조 삭제</p> <p>제19조 별칙</p> <p>제20조 삭제</p> <p>제21조 과태료</p> <p><b>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b></p> <p>제10조의2 규제 신속 확인</p> <p>제10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p> <p>제10조의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p> <p>제10조의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p> <p>제10조의6 임시허가의 취소</p> <p>제10조의7 임시허가의 취소</p> <p><b>제5장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및 활성화</b></p> <p>제11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p> <p>제12조 적합성 인증 심사</p> <p>제13조 적합성 인증 등</p> <p>제14조 적합성 인증의 취소</p> <p>제15조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p> <p>제16조 손해보장사업의 실시</p> <p><b>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b></p> <p>제17조 융합 신산업의 지원</p> <p>제18조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p> <p>제19조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p>	<p>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의2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10조 산업융합촉진 음부즈만 등</p> <p><b>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b></p> <p>제10조의2 규제 신속 확인</p> <p>제10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p> <p>제10조의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p> <p>제10조의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p> <p>제10조의6 임시허가의 취소</p> <p>제10조의7 임시허가의 취소</p> <p><b>제5장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및 활성화</b></p> <p>제11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p> <p>제12조 적합성 인증 심사</p> <p>제13조 적합성 인증 등</p> <p>제14조 적합성 인증의 취소</p> <p>제15조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p> <p>제16조 손해보장사업의 실시</p> <p><b>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b></p> <p>제17조 융합 신산업의 지원</p> <p>제18조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p> <p>제19조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p>	<p>용 및 보호 원칙 제10조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제11조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 제12조 연구개발기반 조성 제13조 표준화 제14조 유·무선망의 고도화 제15조 금융 지원 제16조 창업 및 민간 투자의 지원 제17조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18조 협회 제19조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p> <p><b>제4장 가상융합산업 진흥</b></p> <p>제15조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제16조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제17조 규제개선의 지원 등 제18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p> <p><b>제5장 규제의 개선</b></p> <p>제19조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제20조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제21조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p> <p><b>제6장 이용자 보호</b></p> <p>제22조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제23조 국제협력 등 제24조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지원 제2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p> <p><b>제6장 보착</b></p> <p>제26조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p> <p><b>제7장 보착</b></p> <p>제27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8조 기부 등 제29조 감독 등 제30조 대리인의 선임 제31조 배상책임 등</p> <p><b>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b></p> <p>제32조 청문</p>	<p>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1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12조 연구개발기반 조성 제13조 창업의 활성화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16조 표준화의 추진 제1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8조 세제 지원 등 제19조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제20조 협회의 설립</p> <p><b>제3장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b></p> <p><b>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b></p> <p>제21조 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제22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23조 가상융합서비스 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제24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p> <p><b>제4장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b></p> <p>제26조 기본재산 조성 제27조 공제규정 제28조 손실보전 준비금의 적립 등 제29조 공제조합의 책임 제30조 기본재산 조성 제31조 배상책임 등</p> <p><b>제5장 보착</b></p> <p>제32조 청문</p>	<p>이용 활성화 제12조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b>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b> 제13조 창업의 활성화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16조 표준화의 추진 제1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8조 세제 지원 등 제19조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제20조 협회의 설립</p> <p><b>제3장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b></p> <p><b>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b></p> <p>제21조 가상융합사업 지원사업 제22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23조 가상융합서비스 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제24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p> <p><b>제4장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b></p> <p>제26조 기본재산 조성 제27조 공제규정 제28조 손실보전 준비금의 적립 등 제29조 공제조합의 책임 제30조 기본재산 조성 제31조 배상책임 등</p> <p><b>제5장 보착</b></p>	<p>제13조 미술 관련 법 인 또는 단체의 지원 제14조 미술 서비스 업 활성화 등 제15조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제16조 소비자 보호 제17조 표준계약서 제18조 미술 서비스 업의 신고 등 제19조 영업정지 등 제20조 영업의 승계 제21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22조 연구·조사 등의 지원 제23조 통합미술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p> <p><b>제3장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b></p> <p><b>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b></p> <p>제21조 가상융합사업 지원사업 제22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23조 가상융합서비스 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제24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p> <p><b>제4장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b></p> <p>제26조 기본재산 조성 제27조 공제규정 제28조 손실보전 준비금의 적립 등 제29조 공제조합의 책임 제30조 기본재산 조성 제31조 배상책임 등</p> <p><b>제5장 보착</b></p>

산업디자인법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디지털전환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법	미술진흥법
	<p>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p> <p>제20조 산업 간 협력 체계의 구축</p> <p>제21조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p> <p>제22조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p> <p>제23조 시범사업의 실시</p> <p>제24조 중소기업자동 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p> <p>제25조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p> <p>제26조 산업융합지원 센터의 지정 등</p> <p>제27조 대학 교원 등 의 휴직에 관한 특례</p> <p><b>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b></p> <p>제28조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p> <p>제29조 산업융합 표준화</p> <p>제30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p> <p>제31조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p> <p><b>제6장 보조</b></p> <p>제32조 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p> <p>제33조 청문</p> <p>제34조 수수료</p> <p>제35조 금융지원 등</p> <p>제36조 위임 및 위탁</p> <p>제37조 별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p> <p><b>제7장 벌칙</b></p> <p>제38조 벌칙</p> <p>제39조 과태료</p>	<p>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p> <p>제30조 별칙 적용에 서의 공무원 의제</p>	<p>제33조 권한 · 업무의 위임 · 위탁</p> <p>제34조 별칙 적용에 서 공무원 의제</p> <p>제35조 면책</p>	<p>제22조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p> <p>제23조 콘텐츠 식별 체계</p> <p>제24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p> <p>제25조 표준계약서</p> <p><b>제5장 이용자의 권리 보호</b></p> <p>제26조 이용자 보호 시책 등</p> <p>제26조의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p> <p>제27조 청약철회 등</p> <p>제28조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p> <p><b>제6장 분쟁조정</b></p> <p>제29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p> <p>제30조 분쟁의 조정</p> <p>제31조 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p> <p>제32조 자료 요청 등</p> <p>제33조 조정의 효력</p> <p>제34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p> <p>제35조 조정 비용 등</p> <p>제36조 비밀 유지</p>	<p><b>제7장 보조</b></p> <p>제37조 금지행위 등</p> <p>제38조 손해배상 청구 등</p> <p>제39조 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p> <p><b>제8장 벌칙</b></p> <p>제40조 벌칙</p> <p>제41조 벌칙</p> <p>제42조 양벌규정</p>

## 다. 산업디자인법과 주요 진흥법제의 내용 비교·분석

### 1) 총칙

#### ○ 조항 비교표

산업디자인법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디지털전환 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법	미술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	-	제3조 기본이념	-
-	제3조의2 우선허용 · 사후규제 원칙	-	제4조 우선허용 · 사후규제 원칙	-	-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목적 및 정의 조항

- 진흥법제들은 일반적으로 목적 조항을 통하여 입법목표 진흥 기반 조성 등 해당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정의 조항을 통해 법적 명확성과 규율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규율의 범위를 구체화함

#### ○ 국가 등의 책무

- 진흥법제들은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진흥법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재원 확보 등에 관한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추후 공공디자인법의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지역계획의 수립 등이 이 법에 포함될 경우 국가 등의 책무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진흥법제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두어 일반법 또는 특별

법으로서 당해 법률의 지위를 설정하고 있음

- 디자인 진흥 관련 법률 간 관계 정립을 위해 이 법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2) 추진체계 수립

### ○ 조항 비교표

산업디자인법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디지털전환 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법	미술진흥법
-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제2장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등	제2장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	-
제3조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제5조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기본계획	제5조 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연도별 실행 계획의 수립 · 시행 등	-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시행계획	제5조 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의2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 작성	제7조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 작성	제6조 실태조사 등	제8조 실태조사 등		제6조 실태조사
-	제8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7조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제8조 전환위원회의 기능	-	제7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	제8조의2 갈등조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	-
-	제9조 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	-	-	-
-	제10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	-	-	-
		제6장 보조			
-	-	제28조 재원의 조달	제7조 재원의 확보	제8조 재원의 확보	-

### ○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 진흥법 제들은 공통적으로 정부 또는 소관 행정부처 장관에게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기를 정하고 있음

- 또한 진흥법제의 기본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조문은 항을 달리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여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계획의 수립주기 · 절차 ·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나 자료요청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의견수렴 등에 관한 규율은 개별 진흥법제간의 차이가 있음

법률	조문
산업디자인법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디지털 전환법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 ·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법	제5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 · 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미술진흥법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 실행계획의 수립 · 시행

- 진흥법제는 대체로 3년 내지 5년의 주기로 수립 및 시행되는 기본계획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관 행정부처의 장관 등에게 연도별 시행계획 또는 실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

음

- 다만, 진흥법제는 대체로 이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진흥법제(가상융합산업진흥법)는 이를 소관부처 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산업디자인법의 경우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로 규정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담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법률	조문
산업융합 촉진법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법	제6조(시행계획) ①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미술진흥법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통계 작성 및 실태 조사

- 진흥법제는 대체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별 법제별로 통계 작성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통계 작성 이외에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한 실태조사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양자의 법적 근거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산업디자인법은 현재 통계작성의 근거 조항만을 두고 있으나, 통계 작성 외에 정책에 필요한 폭 넓은 실태조사의 근거를 함께 마련한다면, 진흥정책 추진의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법률	조문
산업디자인법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작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산업융합 관련 통계를 조사·작성하여야 한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미술진흥법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 심의 기관의 설치 및 운영

- 산업융합 촉진법은 제8조에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원회를,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제7조에 산업디지털 전환위원회를, 콘텐츠산업법은 제7조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두어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디자인법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나, 1999년 개정으로 근거 조항이 삭제 됨. 현행 법률은 별도의 심의기관을 두고 있지 않음. 디자인 진흥정책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위원회 제도의 재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3) 산업 지원 및 기반 조성

## ○ 주요 조항 비교표

산업디자인법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디지털전환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법	미술진흥법
제4조(연구 및 진흥 사업의 실시 등) 제5조 산업디자인의	제17조 융합 신산업의 지원 제18조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	제9조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제10조 산업데이터	제11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12조 연구개발기반의 조성	제9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1조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7조 창작 지원 제8조 전시 지원 제9조 창작공간등의 확충

산업디자인법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디지털전환 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법	미술진흥법
육성·개발사업	화 등 제19조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 식재산권 관련 지 원 등 제20조 산업 간 협 력체계의 구축 제21조 산업융합 연 계조직의 지원 등 제22조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제23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 산업융합 신 제품 구매자에 대 한 지원 제31조 산업융합문 화의 기반 조성	활용 촉진 제13조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제14조 산업데이터 플랫폼 제15조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제16조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제20조 기술·서비 스 개발 등의 촉 진 제24조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 정·지원	제14조 유·무선망 의 고도화 제16조 창업 및 민 간투자의 지원 제21조 가상융합산 업 지원사업 제22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23조 가상융합서 비스등 전환 우수 기업 지원 제25조 중앙행정기 관의 장 등의 가 상융합세계 활용 등	제12조 융합콘텐츠 의 활성화 제13조 창업의 활성 화 제15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10조 지역미술 활 성화 제13조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제14조 미술 서비스 업 활성화 등 제22조 연구·조사 등의 지원 제23조 통합미술정 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제5조의2 표준계약 서의 제정·보급	-	-	-	제25조 표준계약서	제17조 표준계약서
제6조 우수산업디자 인상품의 선정 등	-	-	-	-	-
제9조 산업디자인 전 문화사에 대한 지원	-	제11조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화 사	제20조 가상융합사 업자에 대한 지원	-	-
-	제24조 중소기업자 등의 산업융합사 업 지원 등	-	-	제19조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특 별지원	-
-	제29조 산업융합 표 준화	제12조 산업데이터 의 표준화	제13조 표준화	제16조 표준화의 추 진	-
-	제30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제23조 국제협력 등	제24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1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	제35조 금융지원 등	제22조 금융 및 세 제지원 등	제15조 금융 지원 제16조 창업 및 민 간투자의 지원	제18조 세제 지원 등	-
제9조의2 산업디자 인 개발의 대가기 준 등	-	-	-	-	-
제10조 산업디자인 의 보호	-	-	-	제10조 지식재산권 의 보호	제21조 지식재산권 의 보호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8조 산업융합 특 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21조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 ○ 정부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 각 진흥법제는 해당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사업 추진의 근거조항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그 구체화된 정도 및 하위 법령에의 위임여부 등에는

## 차이가 있음

- 산업디자인법의 경우, 다른 진흥법제가 다양한 산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직접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에 비하여, 정부 사업에 관한 내용이 다소 빈약함
- 산업디자인법은 제4조에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제5조에 육성·개발사업 일반에 관하여 정부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이 포괄적이며 다소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음

법률	조문
산업디자인법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p>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p> <p>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li> <li>2.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li> <li>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li> <li>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li> <li>5. 국립·공립연구기관</li> <li>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li> </ol>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산업디자인법 제5조(산업디자인 의 육성·개발사업)	<p>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li> <li>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li> <li>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li> </ol>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li> <li>2.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li> <li>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li> <li>4.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li> <li>5.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li> <li>6.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 산업디자인법상 미비하거나 미흡한 진흥 조항

- 진흥법제들이 일반적 또는 공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지원 사업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제 중 산업디자인법에 미비되거나 미흡한 규정으로서 △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사업, △ 중소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 표준화 사업, △ 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 금융 지원·세제지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조항을 들 수 있음

## ○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사업

- 산업디자인법 제5조의2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법 제2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
- 미술진흥법 제17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계약서의 보급률을 제고하여 공

정한 디자인거래를 통해 발주기업과 디자인기업이 상생하는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표준계약서의 경우 권고적 사항에 그치므로 미술진흥법 제17조와 같은 유인책을 함께 규정하여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 중소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 산업융합촉진법 제25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등이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이나 그에 따른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법 제19조는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산업디자인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 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18조의2 제2항은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정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취지와 부합함

## ○ 표준화 사업

- 산업융합촉진법 제29조, 산업디지털전환법 제12조,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13조, 콘텐츠산업법 제16조는 해당 산업 분야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음
- 산업디자인법은 표준화 사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디자인의 품질 향상, 호환성, 보안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디자인 관련 표준화 법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법률	조문
산업융합 촉진법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①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p>2.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p> <p>3. 그 밖에 산업융합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p>
산업디지털전환법	<p>제12조(산업데이터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기업 간 협력 가능성 증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li> <li>2. 산업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거래</li> <li>3. 산업데이터 간 연계</li> <li>4. 산업데이터 관련 국제표준과의 연계</li> <li>5. 그 밖에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p>제13조(표준화) ① 정부는 가상융합서비스등에 관한 기술, 통신, 보안, 호환성, 상호운용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이하 “표준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li> <li>2.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li> <li>3. 그 밖에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li> </ol>
콘텐츠산업법	<p>제16조(표준화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인 콘텐츠제작과 콘텐츠의 품질 향상, 콘텐츠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7. 7. 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li> <li>2. 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li> <li>3. 그 밖에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li> </ol>

## ○ 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 산업디지털 전환법 제14조는 산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미술진흥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

하고 미술 관련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음

-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자인 산업에 있어서도 디자인 관련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함

법률	조문
산업디지털전환법	<p>14조(산업데이터 플랫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플랫폼 현황 조사 및 연구</li><li>2. 플랫폼 구축 및 운영</li><li>3. 플랫폼 관련 기술·장비·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li><li>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li><li>5. 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 확보 및 연계 지원</li><li>6.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li></ol>
미술진흥법	<p>제23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 ○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 산업융합 촉진법 제30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4조, 콘텐츠산업법 제17조, 미술진흥법 제11조는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

## ○ 금융 지원·세제지원 등

- 산업촉진법 제35조, 산업디지털 전환법 제22조,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15조, 콘텐츠산업법 제18조는 금융 지원 또는 세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금융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둘으로써 폭 넓은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법률	조문
----	----

산업융합 촉진법	제35조(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융합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자등에게 재정 및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2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5조(금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 정부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한 창업활동 및 이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하여 경비·자금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법	제18조(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전문인력의 양성

- 산업융합 촉진법 제28조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정부가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1조는 연구소, 대학, 그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콘텐츠산업법 제14조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1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0조 및 미술진흥법 제12조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여 정부가 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반면, 산업디자인법 제8조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는 정도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위 다른 진흥법제들을 참고하여 ① 정부가 특성화 대학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②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4) 규제 완화

- 산업융합 촉진법은 제3장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등’을 별도로 두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적합성 인증 신청 제도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제4장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지원 등’에 규제 개선의 지원, 관리,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 사업에 선정된 기업 등에 규제 개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제5장 ‘규제 개선’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협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행동강령 또는 운영 준칙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한편,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출시·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임시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산업디자인법은 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규제 개선 등의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특히,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 등 다른 분야 규제로 인하여 디자인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하여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진행하도록 하는 절차 마련을 고려할 수 있음

#### 5) 분쟁조정

##### ○ 조항 비교표

산업디자인법	산업융합 촉진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8조의2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b>제6장 분쟁조정</b> 제29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0조 분쟁의 조정 제31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32조 자료 요청 등 제33조 조정의 효력 제34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5조 조정 비용 등 제36조 비밀 유지

- 산업융합 촉진법은 제8조의2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를 위임하고 있음
- 콘텐츠산업법은 제6장 ‘분쟁조정’을 별도로 두어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콘텐츠산업법 제30조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산업디자인법은 제10조의3에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두고 있음. 다만,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분쟁조정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산업디자인법 제10조의3 제1항 단서는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는 디자인권 심판사건 진행 시 필요에 따라 해당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 중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하면 어떤 분쟁이 있는 명확하지 않음
- 디자인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디자인권 등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산업디자인법상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sup>1)</sup>

## 2. 해외 사례 조사

### 가. 디자인 관련 해외 법제·정책 현황 요약

범주	조항	해외 정책 사례
산업 지원	중소사업자 등에 대한	[프랑스] ○ 간부 인사 채용 지원(ARC) <sup>2)</sup>

1) 다만, 특허청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자이너를 평생 고용계약할 경우에 첫 해 연봉과 사회 보장세의 50%를 지원</li> </ul> <p><b>[홍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DIP)<sup>3)</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스타트업 대상 자금지원,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기회 제공</li> </ul> </li> </ul>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p><b>[영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투자무역청 지원 제도<sup>4)</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회를 위한 자금 제공으로 Tradeshow Access Programme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적격 중소기업이 특정 해외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li> </ul> </li> </ul> <p><b>[프랑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및 해외에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금<sup>5)</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예술인들이 프랑스나 해외에서 예술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li> </ul> </li> </ul>
및 기반 조성	금융 및 세 제지원 등	<p><b>[영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sign Foundation 프로그램<sup>6)</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기업에 최대 100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기업이 고부가가치 혁신 기회를 찾고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li> </ul> </li> </ul> <p><b>[프랑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전파 절차<sup>7)</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제품 개발 및 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2천명 미만 직원)지원. 실현 가능성은 타진하여 예산의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총 예산의 50%는 실행 단계에서 지원하는데,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었을 때는 실행 단계에서 얻은 50%의 자금 지원을 환불하는 것이 원칙</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 감면 혜택<sup>8)</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 분야 컬렉션 창작을 위해 투자한 비용의 10%를 소득세에서 감면</li> </ul> </li> </ul> <p><b>[덴마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덴마크 창조산업 성장 계획 2019<sup>9)</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00만 덴마크 크로네(약 3억 4천만 원)를 지원하고, 그 외 예술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증액과 장학금 지급을 검토</li> </ul> </li> </ul>

전문 인력의 양성	<p><b>[영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기관의 새로운 디자인계 커리큘럼<sup>10)</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로얄 컬리지 오브 아트(Royal College of Art:RCA)는 2013년부터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일본의 경기대학 미디어디자인대학원, 미국의 플랫 인스티튜트와 공동으로 하는 글로벌 혁신 디자인(Global Innovation Design: GID) 프로그램을 창설</li> </ul> </li> </ul> <p><b>[UA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ubai Institute of Design and Innovation(DIDI)<sup>1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후원의 두바이 디자인 혁신학교 설립, 디자인 커뮤니티의 혁신 도모</li> </ul> </li> </ul> <p><b>[미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arning in the Arts<sup>1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나 커뮤니티에서 아이들이나 청소년의 예술 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교부금을 지원함</li> </ul> </li> <li>○ 대학내 디자인을 융합한 커리큘럼<sup>13)</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탠포드 대학 d.school은 '디자인 사고'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li> <li>- 디자인을 융합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거나, 경영과 디자인을 복합적으로 취급하는 MBA 코스 등을 운영하는 대학도 존재</li> </ul> </li> </ul> <p><b>[프랑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장식 혁신의 가치부여(VIA)의 기업 컨설팅, 디자이너 지원 제도<sup>14)</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 장식 분야 디자이너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젝트 재정 지원과 더불어 실내 장식 디자인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li> </ul> </li> <li>○ 로마 아카데미 프랑스 메디시스 빌라<sup>15)</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콩쿠르를 통해 젊은 예술인들을 선발하여 로마에 위치한 메디시스 빌라에서 예술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돋는 제도</li> </ul> </li> <li>○ 디자인을 위한 아고라 장학 제도<sup>16)</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3년 만들어진 아고라 장학 제도는 1990년부터 문화통신부 산하 ‘조형 예술 대표부’의 후원을 받고 있다. 40세 미만의 전문 디자이너들에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실행해 옮길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li> </ul> </li> </ul>
-----------	--

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2017.9. , p27-p29

- 
- 3)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서비스그룹 디자인정책실, 신 디자인 정책연구 해외 디자인 정책 동향 및 교육 사례조사, 2022, p45~47
  - 4)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2017.9. p19
  - 5)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2017.9. , p27-p29
  - 6)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2017.9. , p19
  - 7)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2017.9. , p27-p29
  - 8)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2017.9. , p27-p29
  - 9)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서비스그룹 디자인정책실, 신 디자인 정책연구 해외 디자인 정책 동향 및 교육 사례조사, 2022, p25~p26
  - 10) METI, 해외 디자인 정책, 2020, p187
  - 11)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디자인해외진출로드맵, 2020., p.26
  - 1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2017.9. , p32-p33
  - 13) METI, 해외 디자인 정책, 2020, p184
  - 14)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2017.9. , p27-p29
  - 15)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2017.9. , p27-p29
  - 16)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2017.9. , p27-p29

## 나. 디자인 정책의 유형

세계디자인경영연구원, 디자인정책 21세기 국가혁신전략, 2009, p.61

유형	내용	국가
통제형	• 중앙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고 디자인 정책과 집행을 담당	구 소련
중앙 집중형	• 정부가 주요 디자인 정책을 수립 · 집행 • 디자인은 산업 정책의 일환 •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산업계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재원을 투자	대만, 한국
분산형 (위임형)	• 민간위임 원칙으로 정부 혹은 비정부 진흥기관이 주요 역할을 수행 • 디자인에 대한 총제적인 정책은 부재	대부분의 유럽 소재 디자인 기관
혼합형 (간접형)	• 중앙집중형이 분산형을 사안별로 선별 채택 • 디자인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간여	미국, 일본, 독일
통합형	• 디자인 정책을 기술혁신 정책이나 중소기업 정책과 같은 여타 거시 정책과 통합 • 세계화에 따른 정부 정책 제약에 대한 대응책 • 최근 혼합형에서 통합형으로 전환되는 추세	핀란드

45) 전계서, p 170 (존 헤스켓이 1993년 분류한 국가 디자인 정책 유형에 저자가 통합형을 가미하여 재분류)

## 다. 해외 디자인 산업 관련 정책 현황

- 세계 디자인 주요국들은 다양한 문화 · 산업 정책을 추진하며 디자인을 국가의 경쟁력으로 발전
- 나라별로 국가 주도 디자인 진흥체제 또는 민간주도의 혁신 활동을 통해 디자인 산업의 제고 도모

권역별	나라	진흥기관명	정책수단						
			정책개발	시상인증	전시행사	출판홍보	국제교류	교육연수	연구조사
서유럽	영국	국가 Design Council	●				●	●	●
		지역 British Design&Art Direction(D&AD)		●	●		●		
		지역 Chartered Society of Designers(CSD)		●			●		●
	독일	국가 German Design Council	●		●	●	●		●
동아시아	일본	지역 iF Hannover	●	●	●	●	●		
		지역 Design Zentrum NRW	●	●	●	●	●		
		지역 Design Center Stuttgart	●	●	●	●	●	●	●
	중국	국가 Japan Institute of Design Promo.(JDP)		●	●	●	●	●	
중동	한국	지역 Int. Design Center NAGOYA	●	●	●			●	●
		지역 TOYAMA Design Center	●	●	●	●	●	●	●
	UAE	국가 China Industrial Design Asso(CIDA)	●	●			●	●	
		지역 Beijing Industrial Design Center(BIDC)		●	●		●	●	
미국	한국	국가 Dubai 디자인&패션 위원회(DDFC)	●	●			●		●
		지역 Dubai Design District (3D)		●	●		●		
	미국	지역 Industrial Designer Society of America		●	●		●	●	●
		지역 Design Management Institute	●		●		●		

1) 영국 : 국가 주도형 디자인 정책을 통해 디자인을 국가 경쟁력으로 성장

### ○ Design Council

- 영국의 디자인 정책을 상징하는 디자인협의회로 디자인 방법론 개발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 ‘Designing Demand’라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디자인 활용 비율 확대 도모
- 신생 기업 또는 새로운 사업전략 방향을 모색 중인 성숙
- 단계의 기업 대상 맞춤식 디자인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 ○ British European Design Group

- ‘Designing Demand’라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디자인 활용 비율 확대 도모
- 신생 기업 또는 새로운 사업전략 방향을 모색 중인 성숙 단계의 기업 대상 맞춤식 디자인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 ○ 디자인 비즈니스협회(DBA)

- 디자인 업계의 사업 진출을 돋기 위해 설립
- Design Effectiveness Awards 시상
- 영국국제무역 (BTI) 프로그램에 따른 디자인 전문회사의 수출 노하우 교육

## ○ 콕스 리뷰(Cox Review)<sup>17)</sup>

### ① 인식과 이해에 대한 이슈 해결

- Design Council에 의해 실험 평가되고 발전해온 비즈니스를 위한 디자인 프로그램 Design for Business programme을 영국 전역에 걸쳐 중소기업들과 관련 기관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② 정부지원 및 인센티브 체계의 효율성 향상

- 연구개발 세금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혜택을 높이도록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③ ‘고등교육에서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 창의적 전문가,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넓힘

- 경영, 엔지니어링, 기술과 창조 분야가 조화된 다학제적 교육이 필요함

### ④ 공공 조달의 강력한 힘 이용

- 중앙과 지역 단위로 공급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공공 조달의 힘을 이용

### ⑤ 영국의 창의적인 능력 특성 높임

- 런던을 중심 허브로 하고 영국 내의 창의혁신센터 Creativity and Innovation Centre를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국가 디자인센터를 건립

---

17) 세계디자인경영연구원, 디자인정책 21세기 국가선진전략, 2009, p.78

## ○ 디자이닝 디맨드(Designing Demand)<sup>18)</sup>

- 중소기업 대상의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디자인 카운슬에서 디자인과 경영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연결하여 기업의 디자인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
- 프로그램 구성은 ‘가속화 단계 Accelerate’, ‘혁신 단계 Innovate’, ‘몰입 단계 Immerse’의 3단계로 이루어짐

## ○ 굿 디자인 플랜(The Good Design Plan)<sup>19)</sup>

- 이 전략의 주요 목표는 첫째, 기업과 공공 영역의 디자인 지원을 통해 세계 수준의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혁신 역량을 강화, 둘째, 현재 영국이 처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제시 및 영국 내 모든 지역에 디자인 서비스를 확대, 셋째, 경쟁력 있는 창조 산업과 영국 디자인의 부흥을 위한 최신 디자인 기술을 지원, 넷째, 경제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굿 디자인의 효과를 홍보하는 것임

## ○ Design Foundation 프로그램<sup>20)</sup>

- Innovate UK의 주도로 시행하는 Design foundation 프로그램은 기업에 최대 100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기업이 고부가가치 혁신 기회를 찾고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후기 설계 개발이 아닌, 초기 단계에서의 인간 중심의 디자인 활동 지원이 목적으로 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자와 협력을 할 시, 하도급 업자에게 과도한 커미션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항이 있음

## ○ 고등교육기관의 새로운 디자인계 커리큘럼<sup>21)</sup>

- 영국 로얄 컬리지 오브 아트(Royal College of Art:RCA)는 2013년부터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일본의 경기대학 미디어디자인대학원, 미국의 플랫 인스티튜트와 공동으로 하는 글로벌 혁신 디자인(Global Innovation Design:GID) 프로그램을 창설

18) 세계디자인경영연구원, 디자인정책 21세기 국가선진전략, 2009, p.79

19) 세계디자인경영연구원, 디자인정책 21세기 국가선진전략, 2009, p.81

20)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2017.9. , p19

21) METI, 해외 디자인 정책, 2020, p187

## 2) 독일 : 민간 디자인 협회를 중심으로 디자인 수상 및 전시제도 확대

### ○ iF Award<sup>22)</sup>

- 디자인, 혁신성, 브랜드 가치 등을 평가해 수상작 배출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
- 수상 디자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iF의 온라인 아카이브(디자인 엑설런스)에 등재되어 해외 업체들에 적극적 노출 기회 제공

### ○ Red dot Design Award<sup>23)</sup>

-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디자인 공모전
- 수상작들은 국제적인 전시를 위해 독일과 싱가포르에 있는 레드닷 디자인 뮤지엄에 전시

### ○ Ambiente<sup>24)</sup>

-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고 규모 소비재 전시회
- 암비엔테는 전체 소비재 산업의 중심 허브로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전시업체들이 유행을 선도

### ○ Hannover Messe<sup>25)</sup>

- R&D, 산업 자동화 및 IT, 산업공급 및 에너지 · 환경 기술을 위한 산업 세계 최대 박람회 중 하나

## 3) 중국 : 디자인 관련기업 및 대학, 연구소의 집적화를 통해 디자인 클러스터를 구성하며 디자인 산업 육성

### ○ 산업디자인 발전 촉진 지도의견(2010년)<sup>26)</sup>

-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22)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디자인해외진출로드맵, 2020., p.25

23)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디자인해외진출로드맵, 2020., p.25

24)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디자인해외진출로드맵, 2020., p.25

25)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디자인해외진출로드맵, 2020., p.25

26)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디자인해외진출로드맵, 2020., p.25

- 국가급 창의 클러스터 5~10개 조성
- 산업디자인 표준체계 통계 조사체계 구축

## ○ 문화창의산업과 디자인 산업 간 융합발전에 관한 의견(2014년)<sup>27)</sup>

-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
- 공공부문의 디자인 구매 확대를 통한 디자인 산업 수요증진
- 금융 및 세제지원
- 소득세 15%로 감면, 디자인 수출은 중치세 영세율 적용

## ○ 차이나 2030(2019년)<sup>28)</sup>

- 청화대는 글로벌 디자인 회사 IDEO와 공동으로 디자인 마인드를 지닌 리더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가동하며 자국 우수 디자이너 양성을 위해 노력

## ○ 공업디자인상 창설<sup>29)</sup>

- 2012년, 중국 최초의 공업 디자인상으로서 「중국 우수 공업 디자인상 (China Excellent Industrial Design : CEID)」가 창설됨
- 공업부가 주체가 되어 중국공업보사에 위탁을 하고, 청화대학미술학원, 서북 공업대학, 중국전자신식산업발전연구원, 중국공업설계협회가 회원회를 만들어 운영
-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업디자인상이 다수 존재

## ○ 공업디자인전 개최<sup>30)</sup>

- 2017년 12월 1일, 제1회 중국공업디자인전람회가 후베이성 무한시에서 개최되었는데, 산업·정보화부와 무한시인민정부의 지도하에 공업·정보화부 국제경제기술협력센터와 무한시경제·정보화위원회가 주최
- 전국 약 30개 성·자치구·직할시의 공업디자인센터·기업 약 500개소가 참가하여 “혁신·그린·발전”의 주제 아래, 최첨단 제품이 전시

27)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디자인해외진출로드맵, 2020., p.25

28)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디자인해외진출로드맵, 2020., p.25

29) METI, 해외 디자인 정책, 2020, p188

30) METI, 해외 디자인 정책, 2020, p188

## 4) 일본 :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반영한 브랜드 전략 추구

### ○ 일본산업디자인진흥회<sup>31)</sup>

- ‘Design Year’ 제정에 이어 ‘굿 디자인 상Good Design Award’ 시상과 ‘디자인 · 경제 포럼 Design & Business Forum’ 등의 사업을 시행

### ○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지원능력 강화사업<sup>32)</sup>

-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지원능력 강화사업(地域中小企業知的財産支援力強化事業) 일본 특허청(JPO)는 지역의 지식재산지원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지원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실시
- 각 지역 경제산업국을 통해 중소기업센터, 상공회,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경영혁신지원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지역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디자인 공급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로는 Good Design Award 콘테스트가 있음
- 일본 디자인진흥회는 Good Design Award 콘테스트를 열어 ‘사람들의 삶과 사회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판단하고 수상
- 수상작은 매년 전시회를 통해 공개하며, 국내외의 디자인 관련 기관 미 상업 시설을 포함한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Good Design Award 수상자의 상징인 G Mark가 붙은 품목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면서 디자인을 만든 회사 또는 조직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하였음

### ○ 산업경쟁력과 디자인을 생각하는 연구회 설립<sup>33)</sup>

-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은 산업경쟁력과 디자인을 생각하는 연구회를 설치
- 디자인으로 일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정리하여 대응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

## 5) UAE : 두바이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디자인 산업 육성 프로젝트 진행

31) 세계디자인경영연구원, 디자인정책 21세기 국가선진전략, 2009, p.106

3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2017.9. p23

33)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2017.9. p24

## ○ Dubai Institute of Design and Innovation(DIDI)<sup>34)</sup>

- 정부의 후원 하에 두바이 디자인 혁신학교를 설립하여 디자인 커뮤니티의 혁신 도모

## ○ Dubai Design District<sup>35)</sup>

- TECOM Group에서 두바이 산업 발전을 위해 시민과 사업체의 디자인 지원하는 단체 설립

6) 미국 : 국가 주도의 디자인 진흥 기관이 없이 철저히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둔 기업과 디자인 전문가들의 활동을 통해 디자인 정책 발전

## ○ 미국 산업디자인 협회 (IDSA)<sup>36)</sup>

- 산업디자인의 실습과 교육을 장려하는 회원 기반 비영리 조직
- IDEA와 같은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 워크숍, 공모전 운영
- 기업, 학계, 디자인 컨설턴트 및 개인 디자이너 연결

## ○ 디자인 경영원(DMI)<sup>37)</sup>

- 디자인 경영의 지식체계 확립을 위해 설립되어 디자인 가치, 교육, 연결을 사업 미션으로 운영

## ○ Access to Artistic Excellence<sup>38)</sup>

- 예술적인 창조성을 독려, 지원하며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전미 지역 커뮤니티에 예술을 좀 더 폭넓게 전파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교부금을 지원함

## ○ Challenge America: Reaching Every Community Fast-Track Review Grants<sup>39)</sup>

- 예술의 전파 범위를 확대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교부금이 지원됨

34)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디자인해외진출로드맵, 2020., p.26

35)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디자인해외진출로드맵, 2020., p.26

36)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디자인해외진출로드맵, 2020., p.27

37)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디자인해외진출로드맵, 2020., p.27

38)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2017.9. , p32-p33

39)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2017.9. , p32-p33

## ○ Learning in the Arts<sup>40)</sup>

- 학교나 커뮤니티에서 아이들이나 청소년의 예술 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교부금을 지원함
- NEA의 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한 교부금은 Harvard, Stanford와 같은 유수 대학 비즈니스 스쿨 내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거의 대부분의 주요 디자인 옹호단체나 전문기관을 도운 한편, 굵직한 디자인 엑스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 격년제 디자인상(Design Awards) 프로그램<sup>41)</sup>

- 연방 건물 건축과 관련한 디자인을 장려하고 있으며 수상 분야는 건축 디자인 뿐만 아니라 건축, 보존 및 복구, 엔지니어링 및 테크놀로지, 그래픽 디자인/표지, 인테리어 디자인/작업 공간 디자인, 조경, 리스 건축, 현대화, 도시 디자인 및 계획 등의 여러 디자인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 솔루션을 고안하거나 특정 니즈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의 혁신성, 테크니컬하고 기능적인 우수성, 비용 효율성, 타 프로젝트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는지 등이 심사 기준임

## ○ Design Excellence 프로그램<sup>42)</sup>

- GSA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우수한 건축/엔지니어 디자이너를 고용(2단계에 걸쳐 민관 합동으로 이뤄지는 Peer Review를 통해 선정)하는 등 연방 건축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우수 디자인을 접목시키도록 하고 있음

## ○ 대학내 디자인을 융합한 커리큘럼<sup>43)</sup>

- 스텐포드 대학 d.school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인 ‘디자인 사고’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스텐포드 대학 외에도 디자인을 융합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대학 프로그램이 많이 존재하고, 그 중에는 경영과 디자인을 복합적으로 취급하는 MBA 코스 등도 존재

40)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2017.9. , p32-p33

4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2017.9. , p32-p33

4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2017.9. , p32-p33

43) METI, 해외 디자인 정책, 2020, p184

## 7) 프랑스<sup>44)</sup>

### ○ 기술 전파 절차

- 프랑스 산업재정경제부처 내, ‘지방 산업, 연구 및 환경국’(DRIRE)에서 운영하는 기술 전달 및 보급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임
- 기술 획득을 통하여 제품 개발 및 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2천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음
-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제품 개발을 원하는 기업들도 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여 예산의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총 예산의 50%는 실행 단계에서 지원하는데,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었을 때는 실행 단계에서 얻은 50%의 자금 지원을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 산업 재정 경제부의 지방 산업 · 연구 및 환경국

- 프랑스 전역 24곳에 설치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후원하고 있음
- 디자인 공급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으로는 디자인 관찰자 사업, 지역 디자인 진흥기관 지원 제도, 실내장식 혁신의 가치부여(VIA)의 기업 컨설팅 및 디자이너 지원 제도, 프랑스 및 해외에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금, 로마 아카데미 프랑스 메디시스 빌라, 디자인을 위한 아고라 장학 제도, 세금 감면 혜택, 간부 인사 채용 지원 등이 있음

### ○ 디자인 관찰자 사업

- 프랑스 산업디자인 진흥원에서 1999년부터 실행한 사업으로 해마다 가장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정, 3개월간의 기간 동안 전시
- 디자인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디자인을 비즈니스 경쟁력, 경제적 혁신의 핵심 요소로 만들기 위함이 목적

### ○ 지역 디자인 진흥기관 지원 제도

- 프랑스 디자인은 기업 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들을 지역 디자인 진흥 기관이나 지역 디자인 센터와 연계시키면서 기업 내, 디자인 통합을 위한 진단 및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음

---

44)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2017.9. , p27-p29

## ○ 실내장식 혁신의 가치부여(VIA)의 기업 컨설팅, 디자이너 지원 제도

- 실내 장식 분야를 대상으로 기술, 사회적 변화를 진단하여 시대에 맞는 제품 전략을 수립, 해당 기업에 알맞은 대안을 제시
- 실내 장식 분야 디자이너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젝트 재정 지원과 더불어 실내 장식 디자인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년 실내 장식 분야 전문 박람회에서 제품 및 컬렉션을 선정하여 VIA 라벨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문 박람회에서 행사 및 전시회를 조직하고 있음

## ○ 프랑스 및 해외에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금

- 문화통신부 산하 ‘조형예술 국립센터’ 관할 ‘창작 지원 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이미 다양한 예술 분야(미술, 조각, 설치, 그래픽, 사진, 비디오, 뉴미디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예술인들이 프랑스나 해외에서 예술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

## ○ 로마 아카데미 프랑스 메디시스 빌라

- 문화통신부 산하 ‘조형 예술 대표부’ 내 ‘예술인 및 전문인 부서’ 관할 ‘로마 아카데미 프랑스’ 센터에서 운영
- 콩쿠르를 통해 젊은 예술인들을 선발하여 로마에 위치한 메디시스 빌라에서 예술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돋는 제도

## ○ 디자인을 위한 아고라 장학 제도

- 1983년 만들어진 아고라 장학 제도는 1990년부터 문화통신부 산하 ‘조형 예술 대표부’의 후원을 받고 있다. 40세 미만의 전문 디자이너들에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실행해 옮길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

## ○ 세금 감면 혜택

- 연구 및 고등교육부처 산하 기술국에서 감면하는 세금 혜택으로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한 기업들에 한해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
- 다른 하나는 산업재정경제부처 산하, 경쟁력 및 혁신 정책 서비스에서 감면하는 세금 혜택으로 예술 분야 컬렉션 창작을 위해 투자한 비용의 10%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혜택

## ○ 간부 인사 채용 지원(ARC)

- 프랑스 산업재정경제부처 내, ‘지방 산업, 연구 및 환경국’ (DRIRE)에서 운영하고 있다. 2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디자이너를 고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 디자이너 고용 시, 평생 고용계약일 경우에 첫 해 연봉과 사회보장세의 50%를 지원

## 8) 이탈리아<sup>45)</sup>

- 세계 최대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밀라노가구박람회의 효과 제고를 위해 밀라노디자인워크를 동시 추진
- 일주일간 시내 곳곳에서 제품, 자동차,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전시 개최

## 9) 싱가포르<sup>46)</sup>

- 정부(산업부 경제개발청 산하 디자인싱가포르카운슬(DSG)) 주도로 ‘디자인비즈니스(Business of Design)’ 프로그램 개최
- 자국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 대상 해외 전시 참가, 수출 컨설팅, 홍보 등 해외 진출 지원

## 10) 필리핀<sup>47)</sup>

- 정부(산업부 산하 필리핀무역전시진흥센터(CITEM)) 주도로 세계 주요 디자인 전문 전시(메종&오브제, 밀라노가구박람회 등) 참가 지원 및 자국 디자인 우수성 홍보

## 11) 대만

45)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디자인해외진출로드맵, 2020., p.27

46)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디자인해외진출로드맵, 2020., p.27

47)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디자인해외진출로드맵, 2020., p.27

## ○ 대만 디자인 센터<sup>48)</sup>

- 대만 디자인 센터는 2003년에 대만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고, 대만의 디자인 수출을 촉진
- 네트워킹 및 국제 디자인 이벤트 주최, 여러 디자인 상 운영, 디자인 관련 조사 및 분석, 디자이너 지원이나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디자인 전략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

## ○ Creative Expo Tiawan(대만문박회)<sup>49)</sup>

- 2015년부터 대만문화부(일본문화청에 상당)가 주최하고 대만디자인센터가 운영하는 Creative Expo Taiwan(대만문박회:CET)이 매년 개최됨
- CET에서는 매년 정해진 테마에 따른 전시와 대만의 크리에이티브 제품의 전시가 이루어져 시민의 디자인과 디자인 사고에 참가를 촉구함과 동시에 전세계의 바이어와의 관계 구축에 의한 산업 에코시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함

## 12) 네덜란드<sup>50)</sup>

### ○ 네덜란드의 디자인 관련 정책은 창조산업 관련 정책에 포용됨

- 창조산업은 네덜란드 왕국의 중요 9대 산업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으며, 경제-기후정책부(정식명칭: Ministerie van Economische Zaken en Klimaat)가 주도하는 톱섹터 전체에 대한 정책(톱섹터 정책)에서 정해진 정책이 창조산업 관련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음
- 경제기후정책부는 2019년 '미션 주도형 탑섹터 및 혁신 정책(Missieoftedreven Topsectorenen Innovatiebeleid, MTIB)'을 발표
- MTIB의 정책 방침에 따라 창조산업 분야에서는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최고 컨소시엄 'CLICK NL' 및 창조산업 기업-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략적 자문기관에서 네덜란드의 'Dutch creative council' 등에 의해 창조산업과 그 연구자들이 추진해야 할 혁신 프로젝트와 연구 주제의 방향을 구체화 한 '창조산업의 지식과 혁신을 위한 아젠다(정식명칭 : KENNISEN)'가 작성됨
- CLICK NL은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및 연구자와 그들의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을 매칭하고, 보조금 제도 및 협업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 프로젝트 구축 지원 등을

48) METI, 해외 디자인 정책, 2020, p192

49) METI, 해외 디자인 정책, 2020, p192

50)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서비스그룹 디자인정책실, 신 디자인 정책연구 해외 디자인 정책 동향 및 교육 사례조사, 2022, p21~p23

통해 MTIB의 4가지 사회문제 주제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시작과 추진을 담당

### 13) 덴마크<sup>51)</sup>

#### ○ 덴마크 창조산업 성장 계획 2019(정식명칭: Vækstplan for de kreative verhverv 2019)

##### ① 크리에이티브 스킬 강화

- 기업, 학생,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창의성, 기술, 비즈니스 감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가적, 혁신적 환경으로 '혁신과 창의성을 위한 덴마크 연구소(정식명칭: Laboratorium for Innovation oof Kreativitet Denmark)를 설립
-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00만 덴마크 크로네(약 3억 4천만 원)를 지원하고, 그 외 예술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증액과 장학금 지급을 검토

##### ② 창조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

- 스타트업 기업을 포함한 덴마크 왕국 내 성장 기업의 자금 조달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Growth Fund를 강화
- 국가 보증부 대출 한도를 4700만 덴마크 크로네(약 80억 원)에서 5450만 덴마크 크로네로 확대 쿠쿠네(약 9억 원)로 확대

##### ③ 창의적 기업가 지원

- 기업과 예술-문화 분야와의 매칭을 강화
- 잠재적 투자자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하고 창의적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

##### ④ 공공부문의 창의성을 활용한 혁신

- 공공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가 규격서에 규정되지 않은 독자적인 솔루션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고안하도록 장려.

---

51)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서비스그룹 디자인정책실, 신 디자인 정책연구 해외 디자인 정책 동향 및 교육 사례조사, 2022, p25~p26

- 덴마크 입찰-소비자청 웹사이트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개

## ⑤ 저작권 관련 제도 정비

-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음악, 영화 등을 스트리밍·다운로드하는 것이 불법임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예방 조치를 시작

## ⑥ 수출 증대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 덴마크 산업연맹, 덴마크 기업연맹 등과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덴마크 왕국의 크리스털에이티브 산업을 위한 마케팅 컨소시엄 설립
- 외국의 상업적, 정치적 주요 인사 및 미디어의 덴마크 왕국 방문을 주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덴마크 제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활동에 1000만 덴마크 크로네(약 1.7억 원)를 지원

## ○ Danish Design Center(DDC: 덴마크 디자인 센터)

- Digital Transition, Social Transition, Green Transition의 3개 분야에서 기업, 지자체 등 디자이너와 협력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 추진
- DDC는 덴마크 왕국의 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자인 덴마크'와 공동으로 덴마크 디자인상을 운영
- 덴마크 디자인상을 통해 덴마크 왕국 내 디자인의 가치와 영향력을 보여주고, 기업과 사회에서 디자인과 디자인적 사고의 활용을 장려하고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4) 핀란드<sup>52)</sup>

## ○ Luovan talouden tiekartta (창조경제 로드맵)

- 로드맵 5가지 주제(모델 구축, 교육 고도화, 창조산업 지원, 창조적 산업 발굴화, 창조산업 영향력 평가)에 따라 정책 및 제안이 정리되어 있으며, 창조경제

52)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서비스그룹 디자인정책실, 신 디자인 정책연구 해외 디자인 정책 동향 및 교육 사례조사, 2022, p30~p31

를 촉진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시

## ○ DESIGN FORUM FINLAND의 활동

- DESIGN FORUM FINLAND는 핀란드 미술공예협회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로 1987년 핀란드 미술공예협회, 산업산업부, 기업, 산업예술연맹 오르나모의 공동 프로젝트로 설립됨
- 현재는 기업이나 조직이 디자인 활용 방안을 배울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그 외에도 디자인적 사고에 기반한 교육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비즈니스의 과제를 파악하고 디자인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지원을 하고 있음
- 젊은 디자이너와 전략적으로 디자인을 경영에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한 'DFA AWARDS'라는 시상도 실시

## 15) 홍콩<sup>53)</sup>

### ○ 비즈니스 오브 디자인 위크(BODW)

- BODW는 2002년 Honofit Konofit Desioftn Centre(HKDC)가 시작한 아시아 최고의 디자인 혁신 브랜드 연례 행사
-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크리에이티브 부문에 특화된 자금 조달 제도인 Create eSmart Initiative를 통해 BODW의 리드 스폰서로 참여

### ○ DFA Awards

- DFA Awards는 2003년부터 홍콩디자인센터(HKDC)가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시상제도로, CreateHK가 리드 스폰서로 참여
- 사회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을 강화하고, 아시아에서 상업적 성공과 영향력을 가진 모범적인 디자인과 프로젝트를 시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DFA Design for Asia Awards(DFA DFAA)

- DFA Desioftn for Asia Awards(DFA DFAA)는 아시아의 미의식과 문화를 구현

---

53)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서비스그룹 디자인정책실, 신 디자인 정책연구 해외 디자인 정책 동향 및 교육 사례조사, 2022, p45~47

하고 아시아 디자인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우수한 디자인을 시상

-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디자인 개발에 영감을 준 디자인 솔루션에 수여됨

### ○ DFA 홍콩 영 디자인 인재상(DFA HKYDTA)

- DFA Honof Konoft Younoff Desioftn Talent Award(DFA HKYDTA)는 홍콩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아시아의 디자인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디자이너를 시상
- 2005년에 설립되어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신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며 CreateHK, 홍콩 디자인 인스티튜트, 홍콩과기대 디자인 스쿨이 후원

### ○ 디자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DIP)

- Desioftn Incubation Prooframme(DIP)은 디자인 분야에서 활약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
- 크리에이터, 전문기관, 학술기관과 협력하여 디자인 비즈니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 ○ Knowledge of Design Week(KODW)

- Knowledofte of Desioftn Week (KODW)는 디자인이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2006년에 시작된 이 행사는 국내외 디자이너, 비즈니스 리더, 기업가, 기술자, 교육자 등이 모여 개인, 비즈니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KODW는 워크숍, 포럼, 네트워킹 행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걸쳐 개최됨

### ○ BODW CityProg

- BODW CityProoft는 Honof Konoft Desioftn Centre의 연례 행사 Business of Desioftn Week(BODW)의 지역 확장형 프로그램으로 2018년에 시작됨
- 축제부터 전시회, 학교내 프로그램, 공개 워크숍 등 연중 100회 이상의 행사를 개최함
- 이 페스티벌의 목적은 도시 전체의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와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디자인 단체, 기업, 커뮤니티 조직 간의 교류와 협업을 촉진

## 16) 인도<sup>54)</sup>

### ○ 인도 디자인 마크(I 마크)

- India desioftn Mark(이하 인도 디자인 마크)는 인도의 우수한 디자인을 인정하는 도안 및 심볼마크
- 이 디자인 마크를 통해 인도 제조업체들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우수한 디자인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디자인 클리닉 제도

- Design Clinic Scheme(이하 디자인 클리닉 제도)은 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Scale enterprises(영세중소기업부)와 National Institute of Desioftn(국립디자인연구소)의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디자인 지원책
- 중소영세기업을 단순한 제조업에서 디자인 창조업 혹은 브랜드 창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라. 해외 디자인산업 관련 규범 검토

### ○ EU의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Design Regulation)

- 유럽의회는 2024년 4월 23일 기준의 ‘에코디자인 지침’ (Ecodesign Directive 2009/125/EC)을 개정하는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 ESPR<sup>55)</sup>)을 의결.
- EU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딜’의 핵심요소인 순환경제 패키지의 일환으로, 에코디자인 요건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전체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의 강화를 추진
- 핵심 내용<sup>56)</sup>
  - [적용 대상]<sup>57)</sup> 세탁기, TV, 창문, 차량 충전기 등 일부 품목군에 적용하며, E

54)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서비스그룹 디자인정책실, 신 디자인 정책연구 해외 디자인 정책 동향 및 교육 사례조사, 2022, p65-67

55) REGULATION (EU) 2024/17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amending Directive (EU) 2020/1828 and Regulation (EU) 2023/1542 and repealing Directive 2009/125/EC.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4R1781&qid=1719580391746>

56) 법률신문, EU 에코디자인 규정 유럽의회 통과 – 에코디자인 요구조건 강화, 24.5.23.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8496>

57) 에코디자인 적용 제품 목록 [https://energy-efficient-products.ec.europa.eu/ecodesign-and-energy-label/product-list\\_e](https://energy-efficient-products.ec.europa.eu/ecodesign-and-energy-label/product-list_e)

U 집행위는 향후 위임입법을 통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

- [에코디자인 요구조건] 집행위원회가 에코디자인 요구조건(내구성, 재활용가능성, 수리가능성, 에너지효율성, 자원활용성 등) 등 검증가능한 요구조건을 제정해야 함. 요구조건은 성능조건 또는 정보요건을 포함해야 함.
- [디지털 제품 여권] 동 규정은 이른바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을 최초로 도입하여 제품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 집행위원회는 '등록부' 및 '웹포탈'을 관리해야 함.
-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미판매된 의류 등 소비재 폐기는 금지되며, 집행위는 향후 폐기 금지 품목을 확대할 수 있음. 폐기 금지 대상 이외의 미판매 제품을 폐기한 사업자는 폐기된 제품의 수량과 폐기 사유를 매년 보고해야 함
- [처벌조항] 회원국은 본규정안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해야 함
  - 위 규정의 제정으로, 제품의 전생애주기에 걸쳐 모든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함. 이미 유럽시장에 진출하였거나 향후 유럽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로서는 초기 제품 디자인 단계부터 에코디자인 요건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ESG관련 규제 영역에서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규제 또는 지원이 가능하며, 진흥법의 영역으로 포섭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참고 : 한국 무역협회, EU 에코디자인 규정 발효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방안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tradeFocus/tradeFocusDetail.do?no=2622>

## ○ EU의 ‘Action Plan for Design-Driven Innovatio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13년에 발표한 계획으로, 디자인을 혁신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여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계획의 일환으로 Design for Europe 프로젝트등이 진행되었으며, 디자인 혁신을 촉진했음

## ○ EU의 ‘Design for Europe’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과학기술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인 Horizon 2020의 산업 리더십(Industrial Leadership) 분야에서 중소기업(SME)의 디자인 혁신을 촉진하는 목

적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음

- 유럽의 디자인 및 혁신 플랫폼(european designing innovation platform) Design for Europe을 지원하였음(현재는 서비스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됨<sup>58)</sup>).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사례 연구와 워크숍, 특히 컨퍼런스를 통해 디자인 혁신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활동을 함<sup>59)</sup>
- 산업디자인진흥법상 디자인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판단되나, 별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음.

### 3. 디자인 업계의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 수요

#### 가. 디자인 외연 확대

- 디자인 산업 발전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어 현행 5개 분야에서 범위 확장 필요
  - 다른 법률에 유사 개념이 규정된 경우도 있지만,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과 같이 해당 분야에 대한 ‘디자인’으로 한정한다면 중복 우려는 적을 것으로 보임

[ 신설 디자인분야별 중복될 수 있는 타법 사례 ]

##### 가. 패션·텍스타일

- 관련 법률은 없으나, 산업통상자원부 내 섬유패션산업과가 있음

##### 나. 디지털미디어·콘텐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문화산업”이란 (중략)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 다. 산업공예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중략) 수작업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 나. 권리보호

- 불공정행위 금지<sup>\*</sup> 혹은 표준계약서 우대 조항 신설 등으로 디자인 기업

58) Design for Europe 홈페이지 <https://designforeurope.eu/>

59) Horizon 2020의 법적 근거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 규정(EU) No 1291/2013’

## **및 디자이너의 권리 보호**

\* 타법 사례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불공정행위금지, 공공디자인법상 제13조 제안서의 보상 등

## **다. 거버넌스**

-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거버넌스가 이원화되어 디자인 진흥 정책과 예산이 분산됨
  - 일반 디자인기업이 자체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시 직접생산증명, 납품 실적 등 진입장벽 존재

## **라. 디자인 진흥 기반 강화**

- 디자인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통상의 진흥 법률에 비해 미흡함

## **마. ‘디자인의 날’ 신설**

- 디자이너의 자긍심 고취, 디자인계 결속력 강화 및 사회적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디자인의 날을 정하고, 법적 근거 신설

## IV.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

### 1. 구성체계

범주	조항	방식	설명	유사 사례
총칙	정의	개정	디자인의 개념을 확장	공공디자인법 등
추진 체계	실행 계획의 수립	개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담보	산업융합 촉진법 등
	실태조사	개정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진흥정책 추진의 기반 확보	가상융합산업진흥법 등
	디자인 진흥 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디자인 진흥정책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위원회 제도의 재도입을 고려	산업융합 촉진법 등
산업 지원 및 기반 조성 60)	인공지능 활용 지원 사업	개정	현행 산업디자인법 제5조에 디자인 분야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사업 지원을 위한 항목을 신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인공지능 윤리(지식재산권의 보호)	신설	산업디자인 창작·개선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산업 디자인 데이터플랫폼 구축	개정 / 신설	정의 규정에 “산업디자인데이터” 개념을 신설하고, 산업디자인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관한 조항 신설	산업디지털전환법 등
	표준화	신설	디자인의 품질 향상, 호환성, 보안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디자인 관련 표준화 사업의 근거 마련(AI 학습을 위한 디자인 데이터 표준화)	산업융합 촉진법 등
	디자인 평가 체계 도입	개정	평가 체계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산업디지털전환법 등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 시 디자인 전문회사 지정에 인센티브 부여	미술진흥법 등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신설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신설	산업융합 촉진법 등
	전문인력의 양성	개정	정부가 특성화 대학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 부여	산업융합 촉진법 등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신설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산업융합 촉진법 등
	디자인의 날 지정	신설	디자인의 날을 정하고 법적 근거 마련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등

## 2. 조문별 해설

### 정의

1

#### 제·개정사유

- 현행법 상 ‘산업디자인’에 관한 정의조항은 산업디자인의 기능(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최적화)을 설명하고, 디자인이 적용되는 분야를 산업별로 분류하여 열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위 조항은 2014. 12. 30. 일부개정 시 산업디자인이 적용되는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및 서비스’로 확장하고, ‘창작 및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와 ‘그 결과물’을 포함하는 한편, 하위 종류에 ‘서비스디자인’을 포함한 후 현재까지 이어짐.
- 현대에 이르러 산업디자인의 기능은 단순히 제품의 외관을 꾸미는 데에서, 기능과 심미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개념의 상품을 창조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음. 현행 정의조항은 위와 같은 확장된 산업디자인의 개념과 범위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국가통계체계상 디자인 분야는 특수분류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13년 개편된 분류체계는 8개 대분류\*, 42개 중분류, 154개 소분류로 구분하고 있음

\* 제품, 시각, 디지털/멀티미디어, 공간, 패션/텍스타일, 서비스/경험, 산업공예, 디자인 인프라(디자인 기반기술)

- 2019년 디자인분류체계 재정립 연구 보고서의 디자인 분류체계 통합 최종안은 9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최신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 제품, 시각/정보, 공간/환경, 패션/텍스타일, 서비스/경험, 디자인 일반,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공예, 융합
-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디자인 업무에도 인공지능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어, 디자인의 개념 정의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60) 디자인산업 지원 기반 조성, 디자인산업 진흥, 규제의 개선 등으로 장(章)을 구분할 수 있음

- 현행 디자인분류체계와 2019년 디자인분류체계 연구 등을 종합하여 새로운 산업디자인 분야를 포섭하고 미래지향 디자인 흐름을 반영함
    - 현행 디자인분류체계와 2019년 연구의 디자인분류체계 중 중복되는 산업디자인 분류의 경우 최신 경향에 맞춰 2019년 연구의 명칭을 반영함\*
      - \* ① 제품, ②시각/정보, ③ 공간/환경, ④ 패션/텍스타일, ⑤ 서비스/경험, ⑥ 디지털미디어/콘텐츠, ⑦ 산업공예, ⑧ 융합
    - ※ 2019년 디자인분류체계 연구의 ‘융합디자인’은 제품과 서비스 전반의 생태계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기술과 인문학, 감성 등을 융합하여 디자인의 산업적 가치와 역할을 향상시키는 통합적인 디자인 활동으로서, 다른 분류의 결합·융합 분류체계라고 보여 별도 분류로 구분함
  - 위 분류는 디자인 최종 결과물의 유형에 따르는데 반해, 현행 디자인분류체계의 ‘디자인 인프라(디자인 기반기술)’과 2019년 디자인분류체계 연구의 ‘디자인 일반’은 디자인에 관한 연구, 경영, 교육·정책 등을 포함하는 분류로서 다른 분류와 다소 상이하므로, 별도 항목으로 반영함
  - 인공지능의 경우 디자인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디자인 창작시 활용이 가능한 도구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반영함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산업디자인 정의를 재정립함

### < 신구대비표 >

현 행	개 정	비 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 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 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 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 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u>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 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 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 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 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u>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u>	

현 행	개 정	비 고
디자인 · 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p>1. 제품디자인, 포장 · 시각디자인, 디지털 · 멀티미디어디자인, 공간 · 환경디자인, 패션 · 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 · 경험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산업간 · 기술간 결합으로 창출된 새로운 유형의 융합 디자인 등</p> <p>2. 디자인 모형개발, 연구개발, 경영 및 컨설팅 등 디자인 산업의 발전과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p> <p>3.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창작 및 개선 활동</p>	

### 3

## 기대효과

- 시각 · 정보디자인, 공간 · 환경디자인, 패션 · 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 · 경험디자인, 디지털미디어 · 콘텐츠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융합디자인 등 새로운 산업디자인 분야가 본 법에 따른 지원 범위에 포함됨을 분명히 함
- 디자인 연구 · 경영 · 교육 · 정책 등 디자인 기반 조성, 디자인 창작·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등 산업디자인 창작 · 개선을 지원하는 활동이 본 법에 따른 지원 범위에 포함됨을 분명히 함
- 새롭게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 산업디자인 분야에 대한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지향적 디자인 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함.
- 다만, 패션 · 텍스타일디자인, 디지털미디어 · 콘텐츠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사무로 볼 여지가 있고, 공간 · 환경디자인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소관사무와 일부 중첩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디자인 고유의 사무를 나타내기 위한 근거자료 보완이 필요함

○ 디자인의 정의 조항을 둔 다른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법률명	조문
디자인보호법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p>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p>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p> <p>바. 만화캐릭터 · 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 · 광고 · 공연 · 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p>
건축기본법	<p><b>제3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p>

# 실 행 계 획

1

## 제·개정사유

-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진흥에 관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있고, 개별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급변하는 산업디자인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산업디자인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간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행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실행계획은 이러한 목적에 맞춰 각 연도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디자인 진흥을 촉진할 수 있고, 정부는 지역 간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 방향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있음

2

## 내용

-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실행계획이 없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해 실행계획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

### < 신구대비표 >

현 행	개 정	비 고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④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u>	

현 행	개 정	비 고
<p>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li> <li>2.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li> <li>3.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li> <li>4.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li> <li>5.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li> <li>6. 지역의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li> </ol>	<p>수립·시행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p> <p>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정된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3

## 기대효과

- 산업디자인 진흥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책의 중복과 혼선을 줄이고,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디자인 전반의 진흥을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실행계획에 관한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법률명	조문
산업융합 촉진법	<p>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규제특례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 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 · 시행할 수 있다.</p> <p>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li> <li>2.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 · 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li> <li>3.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li> <li>4.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및 법 ·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li> <li>5.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li> <li>6.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p>

	<p>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p> <p>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 ·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 ·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콘텐츠산업법	<p>제6조(시행계획) ①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행계획의 수립 ·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미술진흥법	<p>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술진흥 중 · 장기 기본방향</li> <li>2. 미술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li> <li>3. 미술 창작 · 기획 · 전시 활동의 지원</li> <li>4. 미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li> <li>5.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li> <li>6. 미술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의 구축</li> <li>7.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li> <li>8. 공공미술품의 관리</li> <li>9. 미술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li> <li>10.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 |  |   |
|--|---|
|  |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 실 태 조 사

1

## 제·개정사유

- 진흥법제는 대체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통계 조사에 대한 근거만 두고 있으나, 통계 작성 이외에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추가함

2

## 내용

-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진흥 정책 추진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함

### < 신구대비표 >

현 행	개 정	비 고
<p>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조의3(실태조사 등)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u>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과 <u>시행계획을</u>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u>디자인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u></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현황, 통계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p>	

현 행	개 정	비 고
	<p>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u>현황, 통계 및 실태조사의</u>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3

## 기대효과

- 산업디자인진흥법은 현재 통계작성의 근거 조항만을 두고 있으나, 통계 작성 외에 정책에 필요한 폭 넓은 실태조사의 근거를 함께 마련한다면, 진흥정책 추진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4

## 참고사항

- 실태조사에 관한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법률명	조문
산업디지털전환법	<p>제6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가상융합산업진흥법	<p>제8조(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p>

	<p>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업자, 기업, 협회 및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미술진흥법	<p>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p>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조(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현황</li> <li>2. 공공디자인 종사자 및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수요·공급 상태</li> <li>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공공디자인 교육 현황</li> <li>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 현황</li> <li>5. 공공디자인 관련 회사·기관·학교 및 단체 현황</li> <li>6. 국가기관등의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및 예산 현황</li> <li>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 |  |  |
|--|--|
|  | <p>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
|--|--|

# 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운영

1

## 제·개정사유

- 산업디자인법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나, 1999년 개정으로 근거 조항이 삭제됨. 현행 법률은 별도의 심의기관을 두고 있지 않음
- 부처별로 산재된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제도의 재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부처간 협업사례 >

- ① 산업부-문화부-서울시간 업무 협약 체결('23.10월, 디자인전시회 통합 등)
  - ② 산업부-서울시 넷지디자인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추진단 공동 출범('23.8월)
  - ③ 산업부-디자인진흥원-지역디자인진흥원(5개)간 정책협의회 출범('23.5월)

- 디자인 관련 분야의 총괄, 조정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디자인의 수준 향상 및 디자인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

2

## 내용

- 디자인 진흥정책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함

< 신구대비표 >

현 행	개 정	비 고
<신 설>	제3조의2(디자인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디자인의 연구·개발, 디자인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과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디	

현 행	개 정	비 고
	<p>자인진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디자인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li> <li>2. 디자인진흥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li> <li>3. 디자인 연구 및 개발 정책 등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li> <li>5. 디자인진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li> <li>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디자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제3항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p>	

현 행	개 정	비 고
	<p>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⑧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 3

## 기대효과

- 디자인진흥위원회를 통하여 부처별로 산재된 디자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부처간 협업과 조정을 통해 디자인산업의 성장이 기대됨

### 4

## 참고사항

- 위원회에 관한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으며, 산업융합 촉진법은 제8조에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원회를,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제7조에 산업디지털 전환위원회를, 콘텐츠산업법은 제7조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두어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률명	조문
舊 산업디자인법 61) [1996. 12. 30. 법률 제521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소속하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p>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lt;개정 2018. 10. 16., 2021. 6. 15.&gt;</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lt;개정 2013. 3. 23., 2018. 1. 16., 2018. 10. 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 · 조정</li> <li>2.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li> <li>3.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li> <li>4. 산업융합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li> <li>5.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li> <li>6.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가표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li> <li>7.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과 제10조제7항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읍부즈만이 보고한 사항</li> <li>8. 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9.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li> <li>10.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li> <li>11.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lt;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0. 16., 2021. 6. 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li> <li>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li> </ol> <p>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

	<p>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⑩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lt;개정 2018. 10. 16.&gt;</p> <p>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목개정 2018. 10. 16.]</p>
산업디지털전환법	<p>제7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①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전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전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④ 위원장은 전환위원회를 대표하며, 전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⑦ 전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하거나 전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전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⑧ 전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콘텐츠산업법	<p>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p>

	<p>2.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 · 조정</p> <p>3.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p> <p>4.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p> <p>5.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위원장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p>&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gt;</p> <p>1.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p> <p>2. 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p> <p>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p>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p> <p>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p> <p>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p> <p>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 ·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61) 1999. 2. 5. 개정으로 삭제되기 전 산업디자인법에 규정된 위원회 근거 조항임

# 인공지능 활용 지원 사업

1

## 제·개정사유

- 현행법 제5조(디자인 육성 · 개발사업)는 정부 지원 사업의 내용과 대상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사항은 미비함
- 디자인 창작·개선 활동에 인공지능 기술이 다수 활용되고 있고 디자인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활용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2

## 내용

- 현행법 제5조에 디자인 분야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사업 지원을 위한 항목을 신설함

### < 신구대비표 >

현 행	개 정	비 고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 · 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 · 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 · 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 · 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현 행	개 정	비 고
<p>지원</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li> <li>2.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li> <li>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li> </ol> <p><u>&lt;신 설&gt;</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li> <li>5.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li> <li>6.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지원</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li> <li>2.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li> <li>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li> <li>4. <b>산업디자인 분야 인공지능 활용 지원 사업</b></li> <li>5.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li> <li>6.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li> <li>7.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3

### 기대효과

- 산업디자인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때, 자체 서버를 구축할 경우 G PU 등 하드웨어 인프라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자체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됨
- 정부가 산업디자인 분야 인공지능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체

인공지능 기반 마련이 어려운 중소 디자인업체들이 보다 용이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4

## 참고사항

### ○ 인공지능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른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법률명	조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p><b>제4조(제약산업육성 · 지원종합계획)</b>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 · 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li><li>2.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li><li>3.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계획</li><li>4. 제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계획</li><li>5. 신약 등 연구개발 및 기술거래 지원계획</li><li>6.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계획</li><li>7.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계획</li><li>8. <u>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u></li><li>9. 그 밖에 제약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ol>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 ·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 · 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b>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b>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산업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u>인공지능</u> 등 신약개발 관련 기술 동향, 시장 동향 등 국내외 신약 연</p>

	<p>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 이를 체계적 · 종합적으로 관리 ·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신약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약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 요건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p>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p><b>제36조(소재 · 부품 · 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 · 관리 등)</b> ① 정부는 소재 · 부품 · 장비분야의 기술 · 무역 · 생산 · 수급시장 등에 관한 정보(이하 "소재 · 부품 · 장비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생산 · 관리 · 유통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재 · 부품 · 장비정보의 수집 · 분석 · 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li> <li>2. 소재 · 부품 · 장비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li> <li>3. 관련연구자 및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li> <li>4. <u>소재 · 부품 · 장비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시스템 구축</u></li> <li>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2. 전문생산기술연구소</li> <li>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li> <li>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li> <li>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li> <li>6. 그 밖에 소재 · 부품 · 장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 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단체 또는 사업자</li> </ol> <p>③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소재 · 부품 · 장비정보 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 사용 · 관리 및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p><b>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b></p> <p>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p> <p>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p>

	<p>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li> <li>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li> <li>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li> <li>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li> <li>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li> <li>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li> </ol> </li> </ol> <p>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항로표지법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항로표지"란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등광(燈光)·형상(形狀)·색채·음향·전파 등을 수단으로 선박의 위치·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로서 광파(光波)표지, 형상표지, 음파표지, 전파표지 및 특수신호표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li> <li>2. "항로표지 부속시설"이란 항로표지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항로표지로의 진입로</li> <li>나. 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한 사무실·숙소·동력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li> <li>다. 나목에 따른 건축물에 설치된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li> </ol> </li> </ol>

	<p>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p> <p>3. "항로표지 장비 · 용품 · 설비 · 체계"란 등명기(燈明器), 제어반, 충방전(充放電)조절기 및 축전지 등 기계류와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 항로표지의 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용품, 설비 및 체계(이하 "항로표지 장비 · 용품등"이라 한다)를 말한다.</p> <p>4. "<u>항로표지 지능정보화</u>"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의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항로표지 분야에 적용 · 융합하여 항로표지의 설치 및 시설관리를 효율화 · 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p>
	<p><b>제43조의2(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b></p> <p>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 ·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계의 구축 · 운영과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을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에의 공동 참여 또는 그 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을 요청 할 수 있다.</p>

# 인공지능 윤리(지식재산권의 보호)

1

## 제·개정사유

- 산업디자인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디자인 창작 및 개선 활동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이와 같은 인공지능의 개발 또는 이용 시 준수하여야 할 윤리 원칙으로서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 등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음
- 산업디자인에 인공지능을 이용할 경우 여러 기준들을 준수해야 하지만, 산업디자인이 시각적인 결과물로서 다른 저작물이나 디자인을 모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윤리 기준이 될 수 있음
- 더욱이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윤리뿐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도 강조되고 있음
- 현행법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권리로 한정되어 있으며, 산업디자인 창작 시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한 대비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2

## 내용

- 현행법상 산업디자인 창작·개선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규정함
  - 현행법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다음 조항으로서 제10조의2를 규정함

### < 신구대비표 >

현 행	개 정	비 고
<신 설>	<a href="#">제10조의4(지식재산권의 보호) ①</a>	

현 행	개 정	비 고
	<p>정부는 산업디자인 창작·개선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불법복제·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li> <li>2.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li> <li>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li> </ol> <p>③ 누구든지 산업디자인 창작·개선 활동을 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 이용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p>	

### 3

## 기대효과

- 산업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명확히 하여 산업디자인 보호와 육성에 기여함
- 산업디자인 창작·개선 활동 시 인공지능 기술 이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저작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 이용에 따른 윤리적·법적 기준을 제시함

○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항을 둔 다른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법률명	조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p><b>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b>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콘텐츠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미술진흥법	<p><b>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b>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창작·기획·전시와 미술품 유통·감정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등의 불법복제·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li> <li>2.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li> <li>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li> </ol>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1

## 제·개정사유

- 산업디자인 분야 데이터 생성, 수집, 가공 활성화 및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산업디자인 데이터 플랫폼 등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증가함
  - 디자인 산업 내에서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디자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 표준화함으로써 산업 내 이해관계자들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산업디자인은 제품·포장·환경·시각·서비스디자인 등 여러 유형의 디자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분야의 디자인 데이터가 상이하므로 정보시스템 등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디자인은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여러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해당 산업 부문에서 디자인 산업의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있으므로, 산업디자인 데이터를 집적한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높음
  -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통한 기계학습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므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의 집적이 필수적이며, 산업디자인 분야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해당 분야 인공지능 기술의 성능을 높여 디자인 활동의 효율 및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겟 사용자별 선호 디자인 추천시스템, 프로젝트 성향에 따른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 추천 시스템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임
- 현행법상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원 사업에 관한 근거가 있지만, 산업디자인 분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는 미흡함
  - 현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실행력이 확보되지 않는 면이 있음
- 디자인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디자인 분야의 독자적인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산업디지털전환법에 근거하여 제조업 등의 산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으나, 서비스 디자인 등 다변화되는 산업디자인 유형 전반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정의 규정에 “산업디자인데이터” 개념을 신설하고, 산업디자인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산업디자인 관련 데이터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이를 중소 디자인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책무와 권한을 부여함

### < 신구대비표 >

현 행	개 정	비 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 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p> <p>&lt;신 설&gt;</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산업디자인데이터”란 산업디자인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활동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p>	<p>·제2항 제2호의2 추가</p>
	<p>제5조의3 (산업디자인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산업디자인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p>	제0조 추가

현 행	개 정	비 고
	<p>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누구든지 산업디자인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⑤ 정부는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⑥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3

## 기대효과

- 산업데이터 생성·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산업디지털전환법과 체계적으로 부합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산업디자인 분야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디자인 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산업디지털 전환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참고하여 데이터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선도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데이터 플랫폼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제21조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미술진흥법 제23조는 문체부가 미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률명	조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데이터법)	<p>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p>
	<p>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설치·운영한다. &lt;개정 2020. 6. 9.&gt;</p> <p>② 활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lt;개정 2016. 1. 6., 2023. 5. 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li> <li>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li> </ol>

<p>3. 제공을 위한 공공데이터 가공 등 관리 지원</p> <p>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p> <p>5. 제1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및 창업 지원</p> <p>6.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민간협력 및 국제협력 지원</p> <p>6의2. 제15조의3에 따른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p> <p>7. 제17조에 따른 저작권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 지원</p> <p>8.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관리 지원</p> <p>9.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공표 지원 및 목록정보 서비스</p> <p>10. <b><u>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 촉진</u></b></p> <p>11.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평가 및 개선의 지원</p> <p>12.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지원</p> <p>13. 제2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 구축 지원</p> <p>14. 제2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p> <p>15.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이용지원 상담, 제공의 대행</p> <p>16.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p> <p>17.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p> <p>③ 정부는 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활용지원센터가 아닌 기관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⑤ 그 밖에 활용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2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b>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템(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필요한</p>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법	<p>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통계청장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제공</li> <li>2.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분석 대상 또는 방법에 관한 통계이용자 교육 및 컨설팅</li> <li>3. 그 밖에 통계청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분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산업디지털 전환법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데이터”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li> <li>2.~5. (생략)</li> <li>6. “산업데이터 플랫폼”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등이 산업데이터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전자적 통합 서비스 및 기반을 말한다.</li> <li>7. (생략)</li> </ol> <p><b>제13조(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b>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 및 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데이터 품질 진단 기준</li> <li>2. 산업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 및 체계</li> <li>3. 산업데이터 품질 인증 및 개선</li> <li>4. 그 밖에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제14조(산업데이터 플랫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책을 마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플랫폼 현황 조사 및 연구</li> <li>2. 플랫폼 구축 및 운영</li> <li>3. 플랫폼 관련 기술·장비·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li> <li>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li> <li>5. 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 확보 및 연계 지원</li> <li>6.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li> </ol> <p><b>제15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선도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업등의 협력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하려는 기업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계획서를 신청받아 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 디지털 전환 목표</li> <li>2. 선도사업 내용</li> <li>3. 산업 디지털 전환 기대효과</li> <li>4.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li> <li>5.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li> <li>6.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li> </ol>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6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에 따라 선정한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등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 (생략)</li> <li>4.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미술진흥법	제23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

# 표준화

1

## 제·개정사유

- 산업디자인은 제품·포장·환경·시각·서비스디자인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데이터 표준화를 거쳐 여러 유형별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디자인 산업 내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디자인은 제조 산업 등 여러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해당 산업 부문에서 디자인 산업의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있으므로, 산업융합 관점에서 산업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의 필요성이 증가함
  - 인공지능 학습에 적절한 형태의 산업디자인 데이터 표준화도 필요함
- 산업디자인 표준화를 위한 정부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디자인 디지털 전환과 디자인 내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함

2

## 내용

- 산업디자인 표준화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표준화법의 표준이 제정된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하여 표준화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 < 신구대비표 >

현 행	개 정	비 고
<신 설>	<p>제5조의4(산업디자인의 표준화)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의 품질향상 과 디자인 산업 내 호환성 확보를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 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p>	·제1항 제2호의2 추가

현 행	개 정	비 고
	<p><u>따른다.</u></p> <p><u>1. 산업디자인 관련 표준 개발 및 보급</u></p> <p><u>2.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u></p> <p><u>3. 산업디자인데이터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u></p> <p><u>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u></p> <p><u>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u></p>	

### 3

## 기대효과

-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디자인 표준을 제정·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하고, 산업디자인 분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게 하여 기술을 고도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4

## 참고사항

- 표준화에 관한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법률명	조문
산업융합 촉진법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①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li> <li>2.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li> <li>3. 그 밖에 산업융합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li> </ol> <p>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산업디지털전환법	<p><b>제12조(산업데이터의 표준화)</b>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기업 간 협력 가능성 증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li> <li>2. 산업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거래</li> <li>3. 산업데이터 간 연계</li> <li>4. 산업데이터 관련 국제표준과의 연계</li> <li>5. 그 밖에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 추진 과정에서 산업 데이터 플랫폼 등의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표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제27조에 따른 협회 등 산업데이터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안을 제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표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가상융합산업진흥법	<p><b>제13조(표준화)</b> ① 정부는 가상융합서비스등에 관한 기술, 통신, 보안, 호환성, 상호운용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이하 “표준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li> <li>2.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li> </ol>

	<p>3. 그 밖에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p> <p>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표준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콘텐츠산업법	<p><b>제16조(표준화의 추진)</b>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인 콘텐츠제작과 콘텐츠의 품질 향상, 콘텐츠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1. 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p> <p>2. 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p> <p>3. 그 밖에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 2023년 12월 7일,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제조 기업이 중대재해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디자인 사인시스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을 배포하였으며, 이는 디자인 표준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음

- 가이드라인은 산업현장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줄이고 근로자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와 전략을 제시하고,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해 근로자의 관점에서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임
- 안전표지<sup>62)</sup>는 체계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표준화 미흡 시 사고위험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을 준수해 제작하고 부착되어야 하며, 디자인 표준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볼 수 있음
- 특히, 안전표지는 현재 한국산업표준(KS)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협력해 채택한 표준인 KS S ISO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표지로 각 표준화되어 있는데, 양자 간 다

62) 산업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한 행동에 대한 금지, 위험 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보호구 착용에 대한 지시,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한다.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 착오로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다.

소 차이<sup>63)</sup>가 있으며, 디자인의 개발을 통한 표준화 사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sup>64)</sup>

- 서울시는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도시 전역에서 일관성 있는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음
-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화로운 거리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부서별로 개별 개발된 시설물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대중교통과 공공공간의 디자인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총 60종, 538개 타입이 개발되었고, 특허등록 2건 및 디자인 등록 28건이 이루어졌음

---

6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반면, KS K ISOSMS 그래픽 심벌의 일부로 문자나 숫자, 구두점, 수학 기호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64) 서울시 홈페이지 – 공공디자인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504586>

### ○ 디자인 산업에서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

- 디자인 산업 내에서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디자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 표준화함으로써 산업 내 이해관계자들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산업디자인은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환경디자인 · 시각디자인 · 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하여 여러 유형의 디자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데이터 표준화를 거쳐 여러 유형별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디자인 산업 내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디자인은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여러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문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디자인 산업의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있음. 산업융합의 관점에서 산업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디자인 분야에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환경에 내장된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적용하는 산업용 AI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디자인 과정 효율 및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겟 사용자별 선호 디자인 추천시스템, 프로젝트 성향에 따른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 추천시스템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임<sup>65)</sup>

### ○ 디자인 산업 내 디자인 분야별 데이터 수요 및 활용 전략<sup>66)</sup>

디자인 분류	디자인 산업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활용 전략
제품디자인	제품의 기능, 사용, 가치 및 외관 등을 최적화하는 과정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관련 산출물을 디지털 자산화하고, 궁극적으로 제품디자인 분야의 DT(Digital Transformation)역량을 강화
시각/ 정보디자인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전달 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관련 산출물을 디지털 자산화하고, 궁극적으로 시각디자인 분야의 DT역량을 강화
환경디자인	생활공간과 환경을 안전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기능적, 미적, 경제적으로 디자인하는 산업활동을 최적화하는 과정에 대한 의사

65) (주)아이디어노랩, 「디자인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isp 전략연구」, 한국디자인 진흥원, 2021. 10. 30. 발표자료 46쪽  
참조

66) (주)아이디어노랩, 「디자인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isp 전략연구」, 한국디자인 진흥원, 2021. 10. 30. 발표자료 44쪽  
참조

	결정을 지원하고, 관련 산출물을 디지털 자산화하고, 환경디자인 분야의 DT 역량을 강화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인간의 인체와 심리적, 감성적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상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의 산출물을 디지털 자산화하고,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분야의 DT역량을 강화
서비스/ 경험디자인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사고와 방법을 기반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발굴하여 사용자경험 만족을 위한 유.무형의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관련 산출물을 디지털 자산화하고, 서비스/경험디자인 분야의 DT역량을 강화
디자인 일반	디자인 연구, 디자인 경영, 디자인 교육/정책 등의 기반적 요소 부분의 다양한 산출물을 디지털 자산화하고, 관련 디자인 분야의 DT 역량을 강화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디지털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콘텐츠를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최적화하여 디자인하는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관련 산출물을 디지털 자산화하고, 궁극적으로 멀티미디어 디자인 분야의 DT역량을 강화
산업공예 디자인	문화적 요소인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아카이빙하여 디지털 자산화하고 산업공예 디자인 분야의 DT역량을 강화
융합디자인	인문학, 감성, 기술(로봇, IoT, 빅데이터, 3D프린팅디자인 등) 등의 융합 디자인 과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관련 산출물을 디지털 자산화하고, 관련 디자인 분야의 DT역량을 강화

## ○ 산업별 디자인 산업데이터 수요<sup>67)</sup>

산업군	디자인 산업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활용 전략
제조	제조 R&D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디자인 분야의 비용과 기간 단축, 관련한 의사결정지원을 통한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
헬스케어	사용자 중심의 ICT를 활용한 UX전략과 디자인씽킹을 활용하는 융합 기반 헬스케어 데이터 사업 모델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광고	광고 수용자들의 성향, 요구 등의 미묘한 변화에 관한 데이터 분석과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UI 구성등으로 관련 비용 및 기간 단축
금융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고객 중심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타겟고객 예측 및 최적의 UI 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67) (주)아이디이노랩, 「디자인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isp 전략연구」, 한국디자인 진흥원, 2021. 10. 30. 발표자료 43쪽 참조

교육	교육과 기술의 융합으로, 빅데이터·AI·가상현실·클라우드 등의 최신 정보기술이 교육에 접목된 형태에서 사용자 중심의 UI 구현 등으로 서비스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통신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뉴노멀(New Normal)사회에 맞춘 사용자경험 데이터를 새로운 디자인 사고방식, 방법론을 통해 고객의 니즈와 행동패턴 파악
유통·물류	오프라인 중심 유통 시장의 온라인 전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이에 따르는 UX, 서비스디자인 필요성 증대

###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참고 사례 : EU의 GAIA-X

- GAIA-X는 유럽에서 독일이 주도하는 클라우드 및 데이터 인프라 프로젝트로, 유럽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환경을 조성하고 유럽 전역에서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GAIA-X는 큰 틀에서 ‘데이터 생태계(Data Ecosystem)’, ‘인프라 생태계(Infrastructure Ecosystem)’,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연합 서비스로 구성된다. 데이터 생태계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서비스(AI, IoT 등)으로 구성되며, EU 데이터 전략에 따라 산업 내, 산업 간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API와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함. ‘인프라 생태계’에서는 산업 내, 산업 간 데이터 활용에 관한 상호운용성(수평적, 수직적 데이터 교환)을 보장하고, 인프라 제공업체들의 서비스를 결합·연결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그리고 데이터 생태계와 인프라 생태계 참여자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데이터 보안과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연합 서비스’를 개발함.<sup>68)</sup>
- 이에 비추어 디자인산업의 제조업 등 타 산업과의 융합 과정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된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산업 내·산업 간 수평적·수직적 데이터 교환)을 보장함으로써 네트워크 전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합·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환경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표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로써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데이터 공유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이를 통해 생산 인프라를 서비스 인프라와 연결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GAIA-X 생태계는 데이터 생태계, 인프라 생태계, 그리고 두 생태계를 연결하

68) 송근혜 등, 「GAIA-X 분석 및 데이터 댐 발전 방향」, 기술정책트렌드, 2020.7. 1-2, 14-15면 참조

는 연합 서비스로 구성되고 데이터와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AI, IoT 등)의 구현을 위한 표준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짐. 산업디자인의 데이터 표준화 및 플랫폼 구축 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sup>69)</sup>

### GAIA-X 생태계 구성 및 주요 내용

- (데이터 생태계) 데이터와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AI, IoT 등)로 구성
  - GAIA-X 데이터 생태계는 공통된 규칙 기반으로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 활성화를 촉진하며
  -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산업 내, 산업 간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 교환과 활용 가능 데이터 생태계 내에서는 기존 데이터 자산에 스마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 서비스 개발,
  - 관련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생태계 혁신 촉진
- (인프라 생태계) 데이터 접근, 저장, 교환을 위한 기술적 규칙 인프라 생태계는 CSP(Cloud Service Provider),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엣지시스템을 포함하며 생태계에서는 네트워크와 상호 연결성 및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및 기술적 규칙 개발
- (연합 서비스) 데이터와 인프라를 연결하는 도구로서, 사용자가 데이터 스페이스를 넘나들며 데이터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 각각의 데이터 연합(데이터 스페이스)은 연합서비스의 오픈소스 코드를 활용해 각각의 데이터 스페이스 내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개발 가능

69) 이상은 등, 「GAIA-X 현황 및 도전 과제 분석」, 디지털플랫폼정부시리즈, 2022. 2. 5면 참조

# 디자인 평가체계의 도입

1

## 제·개정사유

- 현행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 ·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외에 특별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음
- 산업디자인 분야의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하여 객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2

## 내용

- 개정안에 개발된 산업디자인 등의 평가 사업의 지원의 근거를 추가함.

### < 신구대비표 >

현 행	개 정	비 고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 · 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 · 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u>4. 개발된 산업디자인 등의 평가</u> ② (생 략)	

현 행	개 정	비 고
	③ (생 략)	

### 3

## 기대효과

- 평가 체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디자인에 관한 품질 또는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디자인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4

## 참고사항

- 평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법률명	조문
산업디지털 전환법	<p>제20조(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술·장비·소프트웨어와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서비스(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등에 관한 실태·통계 조사</li> <li>기술등의 개발 및 사업화</li> <li><u>개발된 기술등의 평가 및 활용</u></li> <li>기술등의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li> <li>그 밖에 기술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p>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외 가상융합기술 동향·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li> <li><u>가상융합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u></li> <li>가상융합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li> <li>가상융합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li> <li>그 밖에 가상융합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p>

	<p>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콘텐츠산업법	<p>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li> <li>2. <u>개발된 기술의 평가</u></li> <li>3. 기술협력·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li> <li>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li> <li>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주최하에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이 주관하여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 ‘대한민국디자인 대상’, ‘디자인코리아 박람회’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디자인 분야에 대한 평가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하여 일반 산업디자인 시장 참여자 전반에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도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표준계약서

1

## 제·개정사유

- 현행 표준계약서 규정은 권고적 사항에 그치고 있어 표준계약서 보급에 따른 건전한 산업디자인 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 지원 등 우대조치를 하여 표준계약서의 보급률을 높여 산업디자인 발주기업과 디자인기업이 상생하는 건전한 산업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함

2

## 내용

- 개정안에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우대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함

### < 신구대비표 >

현 행	개 정	비 고
<p>제5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p>	<p>제5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우대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p>	

현 행	개 정	비 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p>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 3

## 기대효과

- 표준계약서 활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며, 공정한 산업디자인 환경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4

## 참고사항

- 표준계약서 활용에 관한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법률명	조문
미술진흥법	<p>제17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누구라도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p>

	<p>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은 「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p>
예술인 복지법	<p>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p>제32조(표준계약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p>

# 금융 및 세제지원

1

## 제·개정사유

- 현행법상 금융 및 세제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디자인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를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함

2

## 내용

-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에 대한 근거를 추가함

### < 신구대비표 >

현 행	개 정	비 고
<신 설>	<p><u>제7조의3(금융지원 등) ① 정부는 디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u>② 정부는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 제O항 추가

3

## 기대효과

- 금융 및 세금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디

자인 기업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4

## 참고사항

### ○ 금융 및 세금 지원에 관한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법률명	조문
산업융합 촉진법	제35조(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융합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사등에게 재정 및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디지털전 환법	제22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5조(금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 정부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한 창업활동 및 이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하여 경비·자금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법	제18조(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금융지원사업<sup>70)</sup>

70)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https://kidp.or.kr/?menuno=1487&bbsno=17901&siteno=16&act=view&ztag=rO0ABXQAMzxjYWxsIHR5cGU9ImJvVXJkIiBubz0iNjIyliBza2luPSJraWRwX2JicyI%2BPC9jYWxsPg%3D%3D>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 및 활용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참여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평가료 및 보증료를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율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 2023. 4. 12. 1차 모집이 진행된 이후, 2024. 7. 26. 기준 총 10차에 걸쳐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회차 2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 지원대상은 디자인전문기업(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및 디자인 활용 · 벤처(창업) · 제조기업으로 KIDP 지원 관련 사업 선정기업(스타일테크유망기업 선정기업, 인력지원사업 선정기업, 전문 기업 글로벌화사업 선정기업, 사회적기업 디자인사업 선정기업, 디자인-온라인제조 플랫폼사업(제조서비스플랫폼기업)선정기업,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선정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등)

# 전문인력의 양성

1

## 제·개정사유

- 현행법 제8조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 다른 진흥법제들을 참고하여 ① 정부가 특성화 대학 또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②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 내용

- 정부가 특성화 대학 또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거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조문을 개정함

### < 신구대비표 >

현 행	개 정	비 고
<p>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產學協同)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p>	<p>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자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11조</p>	

현 행	개 정	비 고
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p>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3

## 기대효과

- 전략적 산업디자이너를 양성하여 디자인 산업의 전문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디자인 전반의 진흥을 촉진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음

### 4

## 참고사항

-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법률명	조문
산업융합 촉진법	<p>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7. 11. 28.&gt;</p> <p>1. 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교수요원 등의 기준을 갖춘 대학부설연구소에 한한다)</p> <p>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p> <p>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p> <p>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p>

	<p>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산업융합이 활성화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이 촉진되는 문화(이하 “산업융합문화”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융합문화 교육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li> <li>2~6. (생략)</li> </ol> <p>②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산업융합문화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산업디지털전환법	<p>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인력의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li> <li>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li> <li>3.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li> <li>4. 산업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의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 개발 지원</li> <li>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li> </ol>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p>

	<p>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li> <li>2.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li> <li>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li> </ol>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p>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li> <li>2. 산학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li> <li>3.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운영</li> <li>4. 기술인력의 재교육</li> <li>5.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콘텐츠산업법	<p>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p>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산학 협동과 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기상산업진흥법	<p>제16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p>제30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학원과 고등학교를 각각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또는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p>1.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p> <p>2. 「초·중등교육법」 제45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p> <p>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자체 없이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의 장 또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로 지정된 경우</p> <p>3.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가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p> <p>④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

1

## 제·개정사유

- 현행법상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함

2

## 내용

-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

### < 신구대비표 >

현 행	개 정	비 고
<신 설>	<p><u>제9조의3(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디자인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u></p> <p><u>1. 디자인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u></p> <p><u>2. 디자인산업 관련 전시회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u></p> <p><u>3. 국가 간 산업디자인 공동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u></p> <p><u>4. 디자인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u></p> <p><u>5. 디자인산업 관련 투자유치</u></p> <p><u>6. 그 밖에 디자인산업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p>	

현 행	개 정	비 고
	<p>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 3

## 기대효과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 쇠신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국내 산업디자인의 품질이 향상되고 국내 디자인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4

## 참고사항

-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법률명	조문
산업융합 촉진법	<p>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산업융합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행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산업디지털전 환법	<p>제23조(국제협력 등) ①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법</p>

	<p>령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④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li> <li>2.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민간 부문의 국제협력 지원</li> <li>3. 산업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li> <li>4. 산업데이터 국제 표준화 등의 지원</li> <li>5. 산업데이터의 부정한 유출 방지</li> <li>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⑤ 정부는 산업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p>제24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상융합산업 관련 정보 · 기술 · 인력의 국제교류</li> <li>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시회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li> <li>3. 국가 간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공동 연구 · 개발 및 국제표준화</li> <li>4. 가상융합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li> <li>5. 가상융합산업 관련 투자유치</li> <li>6.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콘텐츠산업법	<p>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li> <li>2. 외국인의 투자 유치</li> <li>3. 국제시장 · 견본시장 · 전시회 · 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li> <li>4. 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li> <li>5.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li> <li>6. 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li> <li>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li> </ol>

	<p>8. 콘텐츠 관련 국제표준화</p> <p>9.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미술진흥법	<p>제11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자료의 출판 및 배급</p> <p>2.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연구</p> <p>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p> <p>4. 그 밖에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디자인의 날 지정

1

## 제·개정사유

- 디자인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디자인산업계의 결속력을 강화하며, 사회적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디자인의 날’을 정하고 법적 근거를 신설함

2

## 내용

- 디자인의 날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

### < 신구대비표 >

현 행	개 정	비 고
<신 설>	<p>제6조의2(디자인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디자인산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0월 00일을 디자인의 날로 정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자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디자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3

## 기대효과

- 디자인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디자인산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궁극적으로 디자인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 4

## 참고사항

-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법률명	조문
전기산업발전 기본법 [시행 2025. 1. 10.]	제5조(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기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산업단지의 날) ① 국민에게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한다. ② 정부는 산업단지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수소의 날) ①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소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5조(수산인의 날) ① 수산업 · 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V. 디자인기본법 제정 방안

### 가. 디자인 관련 현행 법제 검토의 필요성

- 정부 부처별 디자인 분야를 규율하는 여러 법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 개별 법제들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디자인 분야를 규율하고 있음
- 이에 디자인 산업 진흥 법제의 분산화·파편화로 인하여 범정부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디자인 영역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인문, 공학, 의학, 경영 등 타 산업과 융합하며 디자인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음. 디자인을 ‘구분짓는’ 기존 환경에서 나아가 확장된 디자인의 정의와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디자인분야의 소관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원화된 디자인 진흥정책, 예산이 통합되기를 기대함(2022. 10. 18. 한국디자인학회 간담회)
- 디자인 산업의 규모와 빠른 산업 구조의 변화, 타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디자인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진흥 법제로서 통합적 거버넌스의 실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디자인 산업 분야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현행 법제들을 검토함으로써 각 개별 법제의 목적과 규율 대상 및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현행 법제로서 디자인 산업 진흥에 관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현행 법제들로 디자인 산업 분야의 통일적인 거버넌스의 체계를 정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산업디자인에 관한 진흥 정책의 법적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디자인 진흥법」을 비롯하여, 공공디자인 분야를 규율하며 진흥 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디자인 보호에 대한 규율하는 특허청 소관의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 관련 산업을 포함하여 넓은 분야의 문화산업 전반의 진흥 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건축디자인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규율 사항을 다루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축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소관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옥외광고물법)을 비교함

## 나. 법령 비교

	산업디자인진흥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디자인보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건축기본법	옥외광고물법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조문 체계	21개 조문	6장, 23개 조문	11장, 229개 조문	7장, 59개 조문	6장, 26개 조문	21개 조문
목적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 · 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	옥외광고물의 표시 ·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폐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
규율 대상	산업디자인	공공디자인	디자인	문화산업	건축디자인	옥외광고물 등
정의	“산업디자인” 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 · 기능적 ·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 ·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 ·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환경디자인 · 시각디자인 · 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	“공공디자인” 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조성 · 제작 · 설치 ·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	“디자인” 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	“문화산업” 이란 문화상품의 기획 · 개발 · 제작 · 생산 · 유통 ·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애드테인먼트 · 모바일문화 콘텐츠 · 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 · 광고 · 공연 · 미술품 · 공예품과 관련된 산업을 포함한다.		“옥외광고물” 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 · 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 · 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입간판 · 현수막(懸垂幕) · 벽보 · 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디자인진흥 종합계획의 수립</li> <li>· 연구 및 진흥 사업의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li> <li>·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등록 제도</li> <li>· 디자인권 및 디자인권자의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 제작 · 유통에 대한 지원</li> <li>- 투자회사, 제작자, 독립제작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수립</li> <li>-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심의 위원회</li> <li>-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li> <li>•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li> <li>•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li> <li>• 산업디자인전문</li> <li>• 회사에 대한 지원</li> <li>•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li> <li>• 산업디자인의 보호</li> <li>•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li> <li>•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li> <li>•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li> <li>•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li> <li>•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 조성</li> <li>-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li> <li>- 전담기관의 지정 등</li> <li>-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li> <li>-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전문회사 등 지원</li> <li>- 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li> <li>-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li> <li>• 문화산업 기반 조성</li> <li>- 전문인력 양성</li> <li>- 가치평가기관 지정</li> <li>-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li> <li>- 협동개발·연구의 촉진</li> <li>-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li> <li>• 심판절차</li> <li>• 국제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된건축디자인에 관한사항</li> <li>-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li> <li>• 국가건축정책위원회</li> <li>-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li> <li>-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각종 부담금 면제, 인·허가의제</li> <li>-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li> <li>- 문화산업통계조사</li> <li>- 소비자보호 시책 수립</li> <li>-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li> <li>•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규정</li> </ul>	<p>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정책 위원회의 설치</li> <li>- 건축디자인 및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원 위촉</li> <li>•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li> <li>- 건축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 등</li> </ul>
--	--	--	--	---	---	---	--

## 다. 통합적 거버넌스를 위한 개별 법률 검토

- 「산업디자인진흥법」은 디자인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율대상을 “산업디자인(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타 법제에서 규율하는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나아가 디자인 진흥을 위한 일반법으로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합할 위상을 확고히 점유하고 있는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디자인에 한하여 규율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디자인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로서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음.
-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기보다는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 디자인권과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법률로서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역시 디자인 분야 일반의 진흥을 위한 법률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에 관련된 산업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제2조제1호바목),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디자인 관련 산업이라는 규율 방식은 소관 부처 간의 거버넌스 경계를 설정하려는데 초점을 맞춘 정의 방식으로서 통합적 거버넌스의 근거 법제가 되기에는 규율 방식 자체에서 그 한계를 확인할 수 있음. 나아가 디자인보다는 문화산업전반의 진흥을 목표하는 법률로서 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진흥 법제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
- 「건축기본법」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건축디자인 및 도시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고, 건축정책의 일환으로서 디자인 분야를 진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으나, 디자인 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거버넌스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음
-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 자체의 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이 게시되는 건축물 및 도시 공간과의 조화 등을 위하여 건축디자인 및 도시디자인 전문가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센터에 파견을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규제적 성격이 강한 법률이며, 디자인에 특화된 법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디자인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진흥법제로 보기 어려움

※ 이외에도 중소벤처 기업부 소관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sup>71)</sup>, 문화체육

---

7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애인기업

관광부 소관의 「전통문화산업 진흥법」<sup>72)</sup> 등 입법 목적과 관련하여 디자인 개발 촉진 또는 시책 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개별 법제들이 있으며, 각 소관 부처별 세부 분야별 디자인 진흥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거시적 차원의 디자인 진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라. 디자인 산업의 통합적 거버넌스를 위한 입법 방향

- 디자인 관련 현행 법제는 그 목적과 규율 대상이 상이하여, 디자인 분야의 진흥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 나아가 각 개별 법제 중 디자인 산업 분야의 진흥 정책에 있어서 통합적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법률이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임
- 한편, 각 소관 부처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디자인 산업 분야의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각 개별 법제의 기본적 구성과 구조를 존중하면서도 각 소관 부처들의 협업을 가능하게 할 통합적 거버넌스의 법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디자인 산업’에 있어서 문화산업 전체와의 유기적 진흥에 용이한 문화산업진흥법, 건축정책의 일부로서 건축디자인 진흥 등 각 구체적 분야의 거버넌스의 효용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디자인 산업’ 전반을 아울러 범정부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기본법(가안)」을 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디자인 산업 관련 법령의 개정 수요 중 미래지향적 디자인 산업디자인 진흥의 필요성 등 산업디자인법의 자체적 개정을 통해서 일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각 개별 진흥법제들에 기반한 통합적 거버넌스의 체계 구축은 여러 개별 법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기본법제의 규율로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마. 디자인기본법 제정 논의 경과에 관한 검토

---

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2)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 ①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의 융합 또는 연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8대 국회, 남경필 등 31인 2008. 10. 2. 디자인기본법 제정안 발의함

- 제안이유 : 생활수준 향상으로 디자인분야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의 단편/단절적 정책수립으로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고, 문화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공적영역의 디자인이 산업디자인에 비해 낙후되고 영역과 소관기관이 달라 통합적 디자인 관리가 곤란하므로, 디자인기본법을 제정하여 디자인의 전반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 함.
- 주요 내용 :
  - 1)기본이념(공공이익증진, 사회적약자배려, 환경친화적가치지향),
  - 2)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디자인정책수립)
  - 3)대통령 소속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디자인의 진흥 및 지원 사항 심의조정)
  - 4)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5년, 문체부장관)
  - 5)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1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
  - 6)디자인교육 시책 수립 및 시행(문체부장관, 국민의 디자인 이해 증진 및 전문인력 육성과 자질향상)
- 논의 경과 : 관계 부처[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 국토부]의 반대의견이 있었음. 창의적 발상이 요구되므로, 조정 및 통제위주의 일원적 정책이 불필요하다는 지적 및 주무부처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에 이견이 있었음.

## ○ 이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 2. 3. 제정되어 2016. 8.

### 4. 시행됨

- 이는 그 동안 디자인 정책이 디자인의 산업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추진된 바, 디자인을 통해 사회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제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임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디자인기본법안의 방향과 내용을 상당 부분 따르고 있음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이는 디자인 분야가 산업과 공공으로 이원화되어 고착하는 계기가 됨
- 그로 인하여 융합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지연되었고, 디자인법 제가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산업과 문화의 융합이 활성화되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함
- 또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

하도록 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장애, 성별, 연령, 국적 등을 넘어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가 디자인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하에 21대 국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이 발의되었다가(최혜영 등 21인, 2022. 1. 7.),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보완입법 논의가 계속되어옴

## 바. 디자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디자인 산업 진흥 법제의 분산화·파편화와 그로 인한 정책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기본법 제정이 요구됨
  - 디자인 산업 진흥 법제의 분산화·파편화로 인하여 범정부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산업과 공공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국가 디자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부처별 실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하며, 이를 통해 통합적이고 구조적인 디자인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디자인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이에, 디자인산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거버넌스와 추진체계를 정립함
  -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기존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삭제하고, 그 대신 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각 개별법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이 수립하도록 함
- 이로써, 통합적이고 구조적인 국가디자인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사. 디자인기본법 제정 시 검토할 사항

- 현재 디자인에 관한 법률들이 그대로 존속된 채 디자인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법 내용 및 체계상의 중복 우려가 있어, 추후 정비가 필요함
  - 디자인 관련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디자인에 있어 진흥법적 성격을 가진 개별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위 법률들에는 진흥법에 필요한 지원사업, 인력양성, 연구 및 조사, 전담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 해당 조항들을 그대로 둔 채 디자인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디자인기본법은 통합적인 거버넌스(국가디자인위원회)를 위한 근거 조항 외에 별달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각 현행 법률의 조항 중 전 분야 공통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조항을 디자인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O 디자인산업 진흥을 주도할 부처를 선정하기 위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함

-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임. 디자인기본법 제정 시 디자인기본법의 소관 부처 및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를 놓고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산업디자인의 외연이 고전적 의미의 제품디자인에서 공간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디자인 인프라까지 대폭 확장되어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 체계 하에서도 디자인문화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점, 산업융합디자인, AI디자인 등 미래지향디자인 관련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진흥정책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디자인 거버넌스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자인기본법의 소관부처가 되는 것이 타당함

## 아. 디자인기본법 제정안

### 디자인기본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과 민간 분야의 디자인 적용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디자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문화와 디자인산업을 발전시켜 디자인 국가를 실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와 산업, 공공시설 전반에 디자인이 적용된 사회를 실현하여, 모든 국민이 아름답고 편리하며 안전한 사회 및 생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미적 · 기능적 · 경제적 · 문화적 · 환경적 · 사회적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제품 및 서비스, 이미지, 시설물, 공간 등의 외관, 구조, 기능, 배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거나 창작하는 행위 또는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디자인산업”이란 디자인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판매 등 디자인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

한다.

3. “디자인문화”란 사용자가 디자인 행위나 그 결과물인 제품 및 서비스, 이미지, 시설물, 공간 등을 향유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역사적·사회적 가치 및 고유한 생활양식을 말한다.

4.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및 생활환경을 계획·조성·운영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디자인문화와 디자인산업을 발전시켜 생활문화의 질적 향상과 국가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공과民間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디자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공공디자인, 디자인문화, 디자인 산업의 진흥을 위한 디자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자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디자인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국가디자인위원회

제6조(국가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등) ① 디자인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

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9조의 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자인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부처·부문 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6. 디자인진흥실행계획 및 관련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7. 소요 재원의 조달 등 예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디자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

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심의·조정 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심의·조정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 심의·조정 결과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디자인진흥실행계획 등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디자인 정책이 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에 위배되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3장 디자인정책의 수립

제9조(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자인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합산업 및 신기술이 접목된 미래지향디자인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4. 디자인의 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5. 디자인 진흥을 위한 기관과 조직 정비에 관한 사항
6. 디자인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디자인 보호 및 발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9.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디자인 기초연구에 관한 사항
11.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및 디자인 교육에 관한 사항
12.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종합계획의 승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또는 지역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조정하고 그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실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협조 요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장 디자인 진흥

제13조(디자인 교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민의 디자인에 관한 이해

증진 및 기초인력 육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 교육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디자인에 관한 조사·연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디자인산업 및 디자인문화의 기초적인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자인산업 및 디자인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학계·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정부, 학계,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를 삭제한다.
2. 제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자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로 한다.

3. 제10조의2제1항 중 “시 ·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을 “시 · 도지사는 「디자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로 한다.
- ②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바목 중 “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 한다) · 광고”를 “광고”로 한다.
- ③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를 삭제한다.
2. 제6조제1항 중 “종합계획에 따라”를 “「디자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 따라”로 한다.
3. 제6조제2항 중 “종합계획 및”을 “「디자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디자인진흥종합계획 및”으로 한다.
4. 제7조제1호 중 “종합계획의 수립에”를 “「디자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로 한다.

제3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디자인진흥종합계획,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한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수립한 디자인진흥종합계획으로 본다.